고 성 군

공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람	기관의장

공보

제439호 2020. 8. 27.(목)

훈 령

고성군 훈령 제461호 고성군 공보발행 규정 일부개정훈령 ····· 2

입 법 예 고

고성군 공고 제2020-1310호 고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6
고성군 공고 제2020-1313호 고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3
고성군 공고 제2020-1337호 고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33
고성군 공고 제2020-1361호 고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44

고 시

고성군 고시 제2020-182호 하천점용허가(협의) 고시 [마암천:장산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 ····· 67
고성군 고시 제2020-184호 고성군관리계획(방재시설: 장항소하천) 지형도면(변경)에 관한 고시 ····· 68
고성군 고시 제2020-185호 고성군 도로명주소 고시 ····· 70
고성군 고시 제2020-194호 소하천공사 시행(점용·사용) 허가 고시 ····· 72
고성군 고시 제2020-196호 2020년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공통점(지적도근점) 성과 고시 ····· 73
고성군 고시 제2020-199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제전지구) ····· 89

고 시

고성군 공고 제2020-1305호 전자공인 등록 공고 ····· 97

회람									

발행 : 고성군, 편집 : 군정혁신담당관(670-2642, 행정 2642)

고성군 공보발행 규정 일부개정훈령을 이에 발령한다.

고 성 군 수 백 두 현 인

2020년 8월 27일

고성군훈령 제461호

고성군 공보발행 규정 일부개정훈령

고성군 공보발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고성군공보(이하"공보"라 한다)의 편찬 발간에 관하여"를 "고성군공보의 발행 및 운영에"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주관 및 발간)"을 "(주관 및 발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보의 편찬, 발간"을 "고성군공보(이하 "공보"라 한다)의 편찬, 제작"으로, "행정과"를 "공보업무 담당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보는 월 3회(10, 20, 30일 기준) 발행하며, 게재일이 공휴일일 경우 그 다음날로 한다.

제2조제2항 단서 중 "있을 경우에는 발간시기를 조정"을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발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공보는 전자적인 형태로 발행되는 공보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종이로 발행하는 공보를 보완적으로 발행할 수 있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그밖"

을 "그 밖"으로, "통첩"을 "사항"으로 한다.

제4조 중 "공고 기타 순위"를 "공고, 기타의 순서"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공보 게재를 의뢰할 부서에서는 공보게재 사항 및 관련 자료를 붙여 공보 발행 예정일 3일 전까지 공문으로 주관부서에 의뢰해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공보게재를 요건으로 한 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게재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9조의 제목 "(공보비치 및 열람)"을 "(공보의 열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군과 소속기관"을 "주관부서"로,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항상 비치하거나 인터넷에 게시된 공보를"을 "홈페이지에 게시해 일반인이"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성군공보(이하 "공보"라 한다)의 편찬 발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고성군공보의 발행 및 운영에 ----------.
제2조(주관 및 발간) (1) 공보의 편찬, 발간, 보급 등 공보에 관한 사항은 행정과에서 주관한다.	제2조(주관 및 발행) ① 고성군공보(이하 "공보"라 한다)의 편찬, 제작- 공보업무 담당부서(이하"주관부서"라 한다)----------.
② 공보의 발간시기는 월말 기준으로 월초에 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발간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⑵ 공보는 월 3회(10, 20, 30일 기준) 발행하며, 게재일이 공휴일일 경우 그 다음날로 한다. ----------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발행----------.
③ 공보는 인쇄발간과 인터넷에 게시하는 방법을 병행한다.	③ 공보는 전자적인 형태로 발행되는 공보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종이로 발행하는 공보를 보완적으로 발행할 수 있다.
제3조(게재사항) 공보의 게재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3조(게재사항) ---------- 각 호-----.
1. 조례, 규칙, 훈령, 공고, 고시 및 그밖의 예규가 될 통첩	1. ---------- 그 밖 ---------- 사항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4조(체제 및 형식) 공보의 형식은 관보에 준하되 조례, 규칙, 훈령, 고시, 공고 기타 순위로 한다.	제4조(체제 및 형식) ---------- ---------- 공고, 기타의 순서-----.
제5조(자료의 제출과 편집) ① 각 실·과·직속기관·사업소장은 공보게재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결재를 득한 후 관련자료 1부를 첨부하여 행정과장에게	제5조(자료의 제출과 편집) ① 공보 게재를 의뢰할 부서에서는 공보게재 사항 및 관련 자료를 붙여 공보 발행 예정일 3일 전까지 공문으로 주관부서에 의뢰해야

현 행	개 정 안
제출하여야 하며, 행정과장은 이를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한다.
② 행정과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공보게재를 요건으로 한 것이 아닌 것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공보게재를 요건으로 한 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게재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배포기준) 공보의 배부처는 국가기관, 경상남도, 도내 전시군, 의회, 실과사업소 및 전읍면, 유관기관단체로 하되 게재 내용에 따라 조정 할 수 있다.	〈삭 제〉
제9조(공보비치 및 열람) 군과 소속기관의 장은 공보를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항상 비치하거나 인터넷에 게시된 공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공보의 열람) 주관부서---------- ---------- 홈페이지에 게시해 일반인이 ---------- ----------.

고성군 공고 제2020 - 1310호

고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성군 주차장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고성군 조례·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8. 19.

고 성 군 수

1. 개정이유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 규정 및 조문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게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

2. 주요내용

가. 주차장 수급실태의 조사방법을 정함(안 제2조의2)

나.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계약방법을 정함(안 제7조)

다. 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를 정함(안 제11조의4)

라. 부설주차장 설치 관리지역을 정함(안 제12조)

마. 상위법령의 개정 및 일부 미흡한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여 반영
(안 제1조, 제2조, 제4조, 제11조의2)

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표 구분란 명확화(별표 1)

3. 의견 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는 2020년 9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성군수(참조: 도시교통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법인 및 기타 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처: 고성군 산업건설국 도시교통과 교통지도담당

1) 주소: (52943) 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30,
고성군청 산업건설국 도시교통과

2) 전화: (055)670-2332, 팩스: (055) 670-2559

다. 제출 방법 및 문의처

1)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청 산업건설국 도시교통과 교통지도담당〔전화: (055)670-23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개정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1부.

고성군조례 제 호

고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주차장법」(이하"법"이라 한다) 및「주차장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과「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을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로 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법 제7조제1항"을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으로 한다.

제1장에 제2조의2 및 제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주차장 수급실태의 조사방법) ①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3항에 따른 주차장 수급실태의 조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차수요는 조사구역에 주차된 모든 자동차를 대상으로 자동차의 종류별로 나누고, 조사구역을 자동차 사용본거지로 하여 등록된 자동차와 그 밖의 자동차로 나누어 조사한다.
2. 주차시설은 노상주차장·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대상으로 공영과 민영으로 나누어 조사한다. 이 경우 부설주차장은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조사한다.
3. 조사시간은 주간과 야간으로 나누어 조사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방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4조제3호가 중 "법 제39조"를 "같은 법 제39조"로, "장애인사용 자동차표지"를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0항에 따라"를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다만, 전기자동차는 충전목적으로 충전시설에 주차하는 경우 요금 면제)

제7조제1항 중 "법 제13조제2항"을 "법 제13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 입찰 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공시설물의 관리 경험이나 실적있는 법인과 비영리법인, 사회단체 또는 개인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주차장에 대하여는 시장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

구 분	선정방법	납부하여야 할 금액	납부방법
제1항제1호의 경우	입찰	주차장 면적에 대한 도로 점용료 또는 군유재산 대부료 상당액	3개월 단위로 선납
제1항제2호의 경우	입찰	주차장면적에 대한 도로 점용료 또는 군유재산 대부료 상당액	3개월 단위로 선납
제1항제3호의 경우	수의계약	수의계약 금액	3개월 단위로 선납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1조의2의 제목 "(자전거주차장의 설치운영)"을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 본문 중 "자전거주차장"을 각각 "자전거 주차장"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자전거주차장에는 자전거주차장치"를 "자전거 주차장에는 자전거 주차장치"로, "주차장관리자"를 "주차장 관리자"로 한다.

제2장에 제11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4(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 ①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단지의 조성사업
4.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의 조성사업
5.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②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단지조성사업등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실시대상 사업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개선필요사항 등을 통보받고 해당 내용에 기재된 주차장의 전체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이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이상일 경우에는 그 면적을 노외주차장의 규모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및 설치기준)"을 "(부설주차장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영 제6조제2항"을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2항"으로 한다.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생산, 보전, 계획관리지역을 말한다. 다만, 생산, 보전, 계획관리지역 안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제외한다.

제14조제3항을 삭제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7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에 따른 별표 1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고성군 주차장 조례 [별표1](현 행)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3조제1항 관련)

구분	노상 주차장			
	1시간까지			1시간 초과 (1일 주차)
	1구획 최초30분	1구획 10분마다	1시간까지	1구획 30분마다
1급지	500원	200원	1,000원	500원 (4,000원)
2급지	300원	100원	600원	300원 (4,000원)

구분	노외 주차장							
	1시간까지			1시간 초과	1일 주차권	월정기주차		
	1구획 최초30분	1구획 10분마다	1시간 까지	1구획 30분마다		주간	야간	상시
1급지	500원	200원	1,000원	500원	4,000원	40,000원	30,000원	55,000원
2급지	300원	100원	600원	300원	4,000원	25,000원	20,000원	35,000원

■ 고성군 주차장 조례 [별표1] (개정안)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3조제1항 관련)

구분	노상 주차장			
	1시간까지			1시간 초과 (1일 주차)
	1구획 최초30분까지	1구획 30분초과후 10분마다	1시간까지	1구획 30분마다
1급지	500원	200원	1,000원	500원 (4,000원)
2급지	300원	100원	600원	300원 (4,000원)

구분	노외 주차장							
	1시간까지			1시간 초과	1일 주차권	월정기주차		
	1구획 최초30 분까지	1구획 30분초과후 10분마다	1시간 까지	1구획 30분마다		주간	야간	상시
1급지	500원	200원	1,000원	500원	4,000원	40,000원	30,000원	55,000원
2급지	300원	100원	600원	300원	4,000원	25,000원	20,000원	35,000원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이하"법"이라 한다) 및「주차장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과「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
제2조(적용범위 및 용어의 정의) ① (생략)	제2조(적용범위 및 용어의 정의) ① (현행과 같음)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② ----------.
1. "공영주차장"이란 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설치하는 노상·노외주차장을 말한다.	1. ----------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조의2(주차장 수급실태의 조사방법) ①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3항에 따른 주차장 수급실태의 조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차수요는 조사구역에 주차된 모든 자동차를 대상으로 자동차의 종류별로 나누고, 조사구역을 자동차 사용본거지로 하여 등록된 자동차와 그 밖의 자동차로 나누어 조사한다.
	2. 주차시설은 노상주차장·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대상으로 공영과 민영으로 나누어 조사한다. 이 경우 부설주차

현 행	개 정 안
	장은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조사한다.
	3. 조사시간은 주간과 야간으로 나누어 조사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방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4조(주차요금의 감면) 군수는 공공복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호의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한다.	제4조(주차요금의 감면) ---------- ---------- ----------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다음의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사용하는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	3. ---------- ---------- ---------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로서 법 제39조에 따라 장애인사용 자동차표지가 부착 되고, 해당 장애인이 탑승(직접 운전하거나 대리 운전하게 하여 승차하는 경우를 말한다)한 자동차	가. ---------- ---------- 같은 법 제39조--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 ----------
나. · 다. (생 략)	나. · 다. (현행과 같음)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0항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대하여	5.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1항에 따른 ---------- ---------- ---------- ----------

현 행	개 정 안
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다만, 전기자동차는 충전 목적으로 충전시설에 주차하는 경우 요금 면제)
제7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군수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자(이하"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7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 법 제13조제3항----------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공공시설물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비영리법인, 사회단체 또는 개인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 입찰 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공시설물의 관리 경험이나 실적있는 법인과 비영리법인, 사회단체 또는 개인
〈신 설〉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주차장에 대하여는 시장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구 분	선정방법	납부하여야 할 금액	납부방법
제1항제1호의 경우	수의계약	주차장 면적에 대한 도로점용료 또는 군유재산 대부료 상당액	군수가 정하는 방법

구 분	선정방법	납부하여야 할 금액	납부방법
제1항제1호의 경우	위촉	주차장 면적에 대한 도로 점용료 또는 군유재산 대부료 상당액	3개월 단위로 선납

현 행	개 정 안

구 분	선정방법	납부하여야 할 금액	납부방법
제1항제2호의 경우	수의계약	주차장면적에 대한 도로 점용료 또는 군유재산 대부료 상당액	3개월 단위로 선납
기타의 경우	입찰또는 수의계약	입찰가격 또는 수의계약 금액	입찰 또는 개찰시 정하는 방법

③ (생 략)

제11조(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등) 영 제3조의2에 따른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제한은 다음과 같다.

1. 건폐율 : 100분의 90이하
2. 용적률 : 1천500퍼센트 이하
3.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 45제곱미터 이상
4. 높이제한 : 다음 구분에 따른 비율이하로 하되, 대지가 2이상의 도로에 접할 경우에는 가장 넓은 도로를 기준으로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을 적용한다.

가.대지가 폭 12미터미만 도로에 접할 경우 :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

나.대지가 폭 12미터이상도로에 접할 경우 :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6/도로의 폭배. 다만, 배율이 1.8배미만인 경우에는 1.8배로 한다.

구 분	선정방법	납부하여야 할 금액	납부방법
제1항제2호의 경우	입찰	주차장면적에 대한 도로 점용료 또는 군유재산 대부료 상당액	3개월 단위로 선납
제1항제3호의 경우	수의계약	수의계약 금액	3개월 단위로 선납

③ (현행과 같음)

〈삭 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의2(자전거주차장의 설치운영) 군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설치하는 노외주차장과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단지조성사업등으로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에는 노외주차장 총면적의 100분의 5 이상의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하는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자전거주차장에는 자전거주차장치를 설치하고, 그 유지관리는 주차장관리자가 하며,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11조의2(자전거 주차장의 설치운영)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 자전거 주차장----------. 1. ---------- 자전거 주차장----------.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2. 자전거 주차장에는 자전거 주차장치---------- 주차장 관리자----------.
〈신 설〉	제11조의4(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 ①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단지의 조성사업 4.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

현 행	개 정 안
	단지의 조성사업 5.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②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단지조성사업등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실시대상 사업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개선필요사항 등을 통보받고 해당 내용에 기재된 주차장의 전체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이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일 경우에는 그 면적을 노외주차장의 규모로 한다.
제12조(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및 설치기준) 〈신 설〉	제12조(부설주차장 설치)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관리지역을 말한다. 다만, 관리지역 안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제외한다.
법 제19조제3항 및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의 종류와 설치기준은 별표5와 같다.	② ----------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2항---------- ----------. ----------
제14조(주차장설치비용납부자의 주차장 무상사용) ①·② (생 략)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비용납부로 인한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5대 미만으로 한다.	〈삭 제〉

참고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주차장법

제12조의3(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①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도시철도건설사업, 그 밖에 단지 조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단지조성사업등"이라 한다)을 시행할 때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와 규모, 노외주차장의 규모와 관리방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② 부설주차장은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부설주차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이면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제1항의 경우에 시설물의 위치·용도·규모 및 부설주차장의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납부하는 것으로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갈음하여 납부된 비용은 노외주차장의 설치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한 설치비용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노외주차장(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만 해당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조에서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이라 한다)를 주어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제4항 후단에 따른 범위에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줄 수 있는 노외주차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6항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줄 수 없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을 줄여 줄 수 있다.

⑧ 시설물의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은 새로운 소유자가 승계한다.

⑨ 제5항과 제7항에 따른 설치비용의 산정기준 및 감액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하 생략)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조의2(실태조사 방법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이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주차장의 수급(需給) 실태를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하려는 경우 그 조사구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정한다.

1. 사각형 또는 삼각형 형태로 조사구역을 설정하되 조사구역 바깥 경계선의 최대거리가 300미터를 넘지 아니하도록 한다.

2. 각 조사구역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경계로 구분한다.

3. 아파트단지와 단독주택단지가 섞여 있는 지역 또는 주거기능과 상업·업무기능이 섞여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주차시설 수급의 적정성,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같은 특성을 가진 지역별로 조사구역을 설정한다.

② 실태조사의 주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13. 1. 25.〉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정된 조사구역별로 주차수요조사와 주차시설 현황조사로 구분하여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실태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각 조사구역별로 주차수요와 주차시설 현황을 대조·확인할 수 있도록 별지 제1호서식의 주차실태 조사결과 입력대장에 기록(전산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입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관리한다.

[전문개정 2010. 10. 29.]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고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화번호:

○ 의견 내용(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정안	찬반의견		수정안	수정사유
	찬성	반대		

고성군 공고 제2020-1313호

고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고성군 건축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고성군 조례·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8. 19.

고 성 군 수

1. 자치법규명 : 「고성군 건축조례」

2. 개정이유

○ 「건축법」 일부개정 법률이 공포('19.4.23)됨에 따라, 제39조(이행강제금의 부과) 부과 횟수 규정 삭제 및 제39조의3(이행강제금의 감경)의 일부 개정 필요

3. 주요내용

○ 이행강제금 부과(안 제39조)

- 건축법 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를 3회로 규정한 단서 삭제

○ 이행강제금의 감경(안 제39조의3)

- 상위법령 위임범위를 벗어난 이행강제금의 감경기준(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정비 ⇒ 경남도 안전감찰결과 처분요구 반영

4. 개정 조례안 : 덧붙임

5. 입법예고기간 : 2020. 8. 19. ~ 9. 8. (20일간)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0년 9월 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FAX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 성명 · 연락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성군수(건축개발과)

○ 주 소 :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30

○ 전 화 : 건축개발과 건축허가팀(055-670-2742)

○ 팩 스 : 055-670-2199

7.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청 건축개발과 건축허가팀(055-670-27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고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고성군 조례 제 호

고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4항 단서 조항을 삭제한다.

제39조의3제3항중 "100분의 70"을 "100분의 50"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9조 (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 ③ (생 략) ④ 법 제80조제5항에 따라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1회를 그 시정 명령이 이행될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80조제5항 단서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횟수는 총 3회까지로 한다.	제39조 (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단서조항 삭제〉
제39조의3 (이행강제금의 감경) ① ~ ② (생 략) ③ 영 제115조의4제2항제2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70을 말한다.	제39조의3 (이행강제금의 감경)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100분의 50 ----.

참고1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고성군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고성군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삭제 및 상위법에 위배되는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예산이 증액되는 사항이 없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작성자: 건축개발과장 김 경 숙

참고2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개정 2011. 5. 30., 2015. 8. 11., 2019. 4. 23.〉

1. 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2. 건축물이 제1호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허가권자는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금액을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신설 2015. 8. 11., 2019. 4. 23.〉

③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11.〉

④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11.〉

⑤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8., 2015. 8. 11., 2019. 4. 23./단서삭제〉

⑥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11.〉

⑦ 허가권자는 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 8. 6., 2015. 8. 11., 2020. 3. 24.〉

제80조의2(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① 허가권자는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까지 위반내용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축사 등 농업용·어업용 시설로서 500제곱미터(「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는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는 5분의 1을 감경

2. 그 밖에 위반 동기, 위반 범위 및 위반 시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8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2분의 1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감경

② 허가권자는 법률 제4381호 건축법개정법률의 시행일(1992년 6월 1일을 말한다) 이전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주거용 건축물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 8. 11.]

참고3 건축법시행령

제115조의4(이행강제금의 감경) ① 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8. 9. 4.〉

1.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2. 임차인이 있어 현실적으로 임대기간 중에 위반내용을 시정하기 어려운 경우(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최초의 시정명령 전에 이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해당 계약이 종료되거나 갱신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등 상황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위반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별표 1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로 한정하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은 제외한다)
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의 구분소유자가 위반한 면적이 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별표 1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로 한정한다)
5.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당시 존재하던 위반사항으로서 사용승인 이후 확인된 경우
6. 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시설의 경우 같은 항에 따른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한을 말한다) 내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배출시설(처리시설을 포함한다)의 경우

6의2. 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0조의2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청을 하였거나 신고한 배출시설(개 사육시설은 제외하

되, 처리시설은 포함한다)의 경우

7.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와 위반 동기 및 공중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감경이 필요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

② 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8. 9. 4.〉

1.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6호의2의 경우: 100분의 50
2. 제1항제7호의 경우: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

③ 법 제80조의2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감경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100분의 80
2. 연면적 85제곱미터 초과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100분의 60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고성군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연 락 처:

조례안 내용	찬반의견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고성군 공고 제2020 - 1337호

고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고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고성군 조례·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8. 27.

고 성 군 수

1. 자치법규명: 고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2. 개정이유

○ 이장들의 고령화로 고등학생 자녀가 적어 장학금 지급 대상을 대학생까지 확대하여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이장들의 사기진작과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함

○ 장학금 지급 기준을 명확화하여 장학금 지급이 공정하고 실효성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급대상 확대 변경(안 제1조)

- 중·고등학교 자녀 → 중·고등학교 및 대학생 자녀

나. 장학생의 자격 변경(안 제2조)

- 학습성취도, 입상기준, 1자녀 제한, 타장학금 수령자 제한 규정 삭제

다. 평가기준 [별표] 신설 (안 제4조)

- 구체적인 장학생 평가기준 마련 및 기준별 배점 차등화

라. 무상교육에 따른 장학금액의 조문 변경(안 제6조)

- 공납금 전액 → 중학생 20만원, 고등학생 50만원, 대학생 100만원
- 타 장학금을 지급 받은 경우 공제 후 차액을 장학금으로 지급

마.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정비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9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성군수(참조: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하여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의견 제출할 곳

- 우편번호 52943 / 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30
  고성군 행정과(전화: 055-670-2105, FAX 055-670-2109)

○ 의견 제출방법

- 서면·전화·팩스·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청 행정복지국 행정과 행정담당(전화: 055-670-210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고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 1부.

고성군조례 제 호

고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일환으"를 "하나"로, "중·고등학교 자녀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장자녀 장학금(이하"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를 "중·고등학교 및 대학생 이장자녀에 대한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에"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이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중 "장학금"을 "이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으로, "군수"를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일정한 기준에 의한 우선순위"를 "별표의 평가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으로 선발함에 있어서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수의 균형, 학교간"을 "제1항에 따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 수의 균형, 학교 간"으로 한다.

제5조 중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장학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일부만 지급할 수 있다.

1. 중학생: 20만원
2. 고등학생: 50만원
3. 대학생: 100만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 군수가 지급하는 장학금은 이미 지급받은 장학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대해서는 제8조에 따른"으

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 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당해 학생의 연간 수업료에 상응하는”을 “해당 학생의 장학금을 초과하는”으로, “있을때”를 “있을 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0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고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별표] (신설)

평 가 기 준(제4조제1항 관련)

1. 총점 배분

계	이장 경력	학업성적 또는 특기	이장 상훈	기장학금 수혜여부
100	30	30	20	20

2. 항목별 심사기준

가. 이장 경력

근속연수	7년 이상	6년이상 7년미만	5년이상 6년미만	4년이상 5년미만	3년이상 4년미만	1년이상 3년미만
점 수	30	25	20	15	10	5

나. 학업성적 또는 특기

학업성적 우수분야	5급(60/100)이내 과목 수/전체 과목 수				
	90%이상	80%이상 90%미만	70%이상 80%미만	60%이상 70%미만	50%이상 60%미만
예·체능, 또는 기능 특기 분야	국가대표급, 각종대회 장관표창 이상 수상자	도 대표급, 도교육감 표창 수상자	군 대표급, 군수 또는 교육장표창 수상자	학교 대표급, 학교장 표창 수상자	수상경력이 없는 예체능 또는 기능 특기자
점 수	30	25	20	15	10

다. 이장 상훈: 행정기관 상훈에 한하며 상위 훈격 1개, 1회만 인정

훈 격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도지사	군수
점 수	20	15	10	5

라. 기 장학금 수혜여부

횟 수	없음	1회	2회	3회 이상
점 수	20	15	10	5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장사기진작의 일환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재능이 뛰어난 중·고등학교 자녀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장자녀 장학금(이하"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1조(목적) ---------- 하나---------- 중·고등학교 및 대학생 이장자녀에 대한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에 ----------.
제2조(장학생의 자격) ①장학생은 이장으로 1년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중 학습성취도가 '미' 이상인 과목이 전체 과목수의 50퍼센트 이상인 자. 다만, 신입생은 입학전 최종학교의 성적으로 갈음한다. 2.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분야에 시군단위 이상 대회에서 입상한 자 ②제1항 각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도 이장1인에 대하여 1자녀로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 받는 자는 제외한다.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이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추천) 읍·면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학년마다 선정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제3조(추천) ---------- 이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제4조(선발) ① 군수가 읍·면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 할 때에는	제4조(선발) ① ----------

현 행	개 정 안
일정한 기준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학기 개시후 1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별표의 평가기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으로 선발함에 있어서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수의 균형, 학교간의 균형, 읍·면 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 수의 균형, 학교 간----------.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년간 군이장 정수의 15%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제5조(장학생의 정원) ---------- 범위 ----------.
제6조(장학금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도 있다.	제6조(장학금액) ① 장학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일부만 지급할 수 있다. 1. 중학생: 20만원 2. 고등학생: 50만원 3. 대학생: 100만원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 군수가 지급하는 장학금은 이미 지급받은 장학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7조(장학금의 지급) ① (생 략)	제7조(장학금의 지급) ① (현행과 같음)
②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②---------- 대해서는 제8조에 따른 ---------- 해당 ----------.
제8조(지급의 정지) ①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제8조(지급의 정지) ①----------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현 행	개 정 안
있다.	---.
1. 당해 학생의 연간 수업료에 상응하는 타 장학금 등을 이미 받았거나 받기로 예정되어 있을 때	1. 해당 학생의 장학금을 초과하는 ---------- 있을 때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②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
제10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규칙) ---------- 필요----------.

붙임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고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중학생·고등학생 장학금 정액 지급 및 대학생까지 장학금 지급 대상 확대 따른 장학금(연 13,500천원 정도) 소요

2. 미첨부 근거 규정

○ 「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조례의 개정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므로 비용추계서를 미 첨부함.

작성자: 행정과장 박 문 규

붙임2 관계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고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에 대한 일부 개정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연 락 처:

조례안 내용	찬반의견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고성군 공고 제2020 - 1361호

고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고성군 조례·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8. 27.

고 성 군 수

1. 개정이유

가. 행정안전부, 우리군 자치법규 자율정비 추진에 따라 상위법령과 다르게 규정하거나 제·개정 사항을 미반영한 사항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나. 감사원 대행감사에서 지적된 방재단원에 대한 재해보상 규정을 마련하는 등 「고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에 따라 제명 변경

- (현행) 고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개정) 고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나. 고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설치근거 마련(안 제2조)

다.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안 제9조)

라. 지역자율방재단의 활동지원 및 재해보상(안 제10조 ~ 안 제11조)

마. 교육·훈련, 감독 등(안 제12조 ~ 안 제16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는 2020년 9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성군수(참조: 안전관리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법인 및 기타 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처: 고성군 산업건설국 안전관리과 자연재난담당

1) 주소: (52943) 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30.
고성군청 산업건설국 안전관리과

2) 전화: (055)670-2512, 팩스: (055) 670-2509

다. 제출 방법 및 문의처

1)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청 산업건설국 안전관리과 자연재난담당〔전화: (055)670-251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개정문 1부.

고성군조례 제 호

고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2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방재단의 설치)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고성군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제3조(구성) ① 방재단에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

② 방재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재난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하여 군수가 임명한다.

③ 부단장과 간사는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④ 방재단원은 고성군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단체·기업체·기관·학교·종교단체·동호회 등으로 하며, 방재단에 가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방재단원으로 할 수 있다.

⑤ 읍·면지역자율방재단(이하 "읍·면방재단"이라 한다)의 단원은 방재단원이 되고 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⑥ 읍·면방재단의 대표(이하 "읍·면 대표"라 한다)는 해당 읍·면방재단의 단원 중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을 얻은 사람으로 한다.

제4조(임원 및 임무 등) ① 단장은 방재단을 대표하고, 방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고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⑤ 읍·면 대표는 읍·면방재단을 대표한다.

⑥ 단장, 부단장, 간사, 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해임) ① 군수는 단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장을 해임할 수 있다.

1. 사망하거나 소재가 불명확한 경우
2. 고성군 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② 단장은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해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의회를 통하여 그 단원 등을 해임할 수 있다.

제6조(자율방재협의회) ①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고성군 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단장, 부단장, 읍·면 대표,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에서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단장이 된다.

④ 협의회는 위원장 또는 단원 3분의 2 이상의 건의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심의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임무) ①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군수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방재단의 주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 예찰활동 및 신고·정비
3. 재난 예방·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4. 재난관련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
5.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유도, 차량 통제 등
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8. 감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에 필요한 인력지원 등
9.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파악 및 방재단에 통보
10.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 통제 등 활동 전개 등

③ 방재단은 고성군 외 지역 피해 발생 시 인원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④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할 수 있다.

제8조(소집) ① 단장 또는 군수는 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으며, 군수가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방재단을 소집하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 시에는 마을앰프 등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제9조(운영 등) ① 단원은 방재단의 활동을 한 후 단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방재단 활동을 확인하고 월 1회 이상 별지 제4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 단계시 재난안전상황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재난안전상황실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⑤ 재난안전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명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0조(활동지원) ① 단장은 매년 9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출된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재정적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운임,숙박비, 식비, 중장비 사용에 필요한 유류대 및 장비사용료 등 필수 경비 다만, 운임, 숙박비, 식비의 지급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2.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단, 자연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있는 경우에는 제외
3.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4.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
5. 단원의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에 드는 비용
6. 중앙지원단 자문에 소요되는 비용
7. 사무실 운영비 등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비용
8. 단원이 재해예방·대응·복구 등에 참여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 지급하는 재해보상금

④ 활동비 등은 제9조제2항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등을 검토하여 군수가 단원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재해보상) ① 재해보상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보상청구서를 작성하여 단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

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한다.

1.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당한 날
2. 장해보상: 해당 단원의 장애등급이 확정된 날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단원이 사망한 날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재해보상 청구가 들어온 때에는 「고성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보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④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 따른 상속의 순위를 따르며,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순위가 같은 사람이 2명 이상인 때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보상금을 받을 모든 유족(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이 대표자를 선정하고, 재해보상금 수령을 대표자에게 위임한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지급에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재해보상금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⑥ 군수는 단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해보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사실조사하여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출입증 소지)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하려는 경우에는 군수가 발급한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제13조(교육) ① 단원에 대한 교육은 군수가 직접 실시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고, 군수는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군수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세부 사항은 해당년도 「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

제14조(훈련)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군수와 협의한 경우에는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5조(중앙지원단 자문 등) 군수 및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 시 중앙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6조(감독) ① 단장은 지원받은 경비의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분기말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방재단에 지원한 경비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된 방재단은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 고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별표 1]

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제11조 관련)

보상등급		보상금 결정 기준	비고
요양보상		지방서기보 10호봉 봉급액 5년분	
장제보상		지방서기보 10호봉 봉급액 3월분	
유족보상		지방서기보 10호봉 봉급액 10년분	
신체 등급 별 장 해 보상	제1급	유족보상금의 100/100	※부상의 범위 및 등급에 관하여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을 준용한다.
	제2급	유족보상금의 88/100	
	제3급	유족보상금의 76/100	
	제4급	유족보상금의 64/100	
	제5급	유족보상금의 52/100	
	제6급	유족보상금의 40/100	
	제7급	유족보상금의 20/100	
	제8급	유족보상금의 10/100	
	제9급	유족보상금의 5/100	

비고

1. 요양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대응·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훈련 등으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요양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진료비·치료비·수술비·약제비·입원비 등을 지급한다.
2. 장해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대응·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훈련 등으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완치된 후에 신체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등급별 장해의 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되, 2가지 이상의 신체장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에 따른다.
3. 장제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대응·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훈련 등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유족 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4. 유족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대응·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훈련 등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5. 제3호 및 제4호에서 "유족"이란 사망한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녀 또는 조부모를 말한다.

■ 고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고성군 지역자율방재단 가입신청서 <개인>
(제3조 관련)

등록번호 :

성 명	(남,여)	연 령		혈 액 형	
주 소				일반전화	
				휴대전화	
자 격 증 또는 기능		운전가능여부 (면허종류)			
재 난 현장경험					
희 망 활동내용					

[특이사항]

본인은 고성군 지역자율방재단 가입을 희망하기에 다음과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가입희망자 ○ ○ ○ (인 또는 서명)

고성군 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

※ 읍·면지역자율방재단이 되고자 하는자는 본 서식을 공통 사용한다.

■ 고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고성군 지역자율방재단 가입신청서 <단체 등>
(제3조 관련)

등록번호 :

단 체 명			대 표 자	(휴대전화:)	
주 소				대표전화	
담 당 자	(휴대전화:)		부서명		
인 원	남 명	여 명	총인원	명	
장 비	장비명(규격) 대	장비명(규격) 대	장비명(규격) 대	장비명(규격) 대	
지원가능	남 (명) 여 (명)	장비(규격) 대	장비(규격) 대	장비(규격) 대	
전문분야					
활동희망분야					

[특이사항]

본 단체는 고성군 지역자율방재단 가입을 희망하기에 다음과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표 ○ ○ ○ (인 또는 서명)

고성군 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

구비서류	가입희망 회원명부 1부

가 입 희 망 회 원 명 부

[단체명:]

연번	성 명	성별	연령	자 격 증 및 기능	운전가능 여 부	혈액형	비 고
1							
2							
3							
4							
⋮							

■ 고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별지 제3호서식]

활 동 확 인 서(제9조 관련)

성 명	(인)	등록번호	
활동내용	사 유		
	방 법		
	시 간	년 월 일 부터 ~ 년 월 일 까지 (시간)	
	장 소		
	내 용		
[건의사항]			
확인자 직위	읍·면 대표	성명	(인)

본인은 고성군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원으로써 위와 같이 활동하였기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고성군 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

※ 확인자는 읍·면 대표나 단장 또는 현장 총괄책임자 등

■ 고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별지 제4호서식]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제9조 관련)

등록 번호	성 명	활 동 상 황		비고
		횟수	시간	
1				
2				
3				
⋮				

[비 고]

1. 등록번호
   - 개인의 경우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번호를 기재
   - 단체의 경우는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번호와 회원명부의 연번 기재 [(예시) 10-1]
2. 횟수, 시간은 활동확인서의 활동시간을 합하여 관리
3. 자료가 계속 변경되므로 한글이나 EXCEL 등으로 관리
4.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기초로 작성되어야 함. 활동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방재단에 제출

■ 고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별지 제5호서식]

'○○년도 연중 활동계획서(제10조 관련)

[고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월별	주 요 내 용	비고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 세부사항은 별도붙임 가능

※ 자치단체의 방재계획과 연계하여 작성

■ 고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별지 제6호서식]

요양 〔 〕, 장해 〔 〕, 장제 〔 〕, 유족 〔 〕 보상청구서(제11조 관련)

※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사고자	소속	전화번호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청구인	주소	전화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사고자와관계	
사고경위 및 요양	사고(사망)일시	
	사고(사망)장소	
	사고경위 1. 화재 【 】 2. 구조 【 】 3. 구급 【 】 4. 기타 【 】	
	요양(진단)병원	요양(진단)부위
	요양(진단)결과	요양기간
청구금액	요양보상	장해보상
	장제보상	유족보상
	청구금액	

「고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단장 :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제출서류	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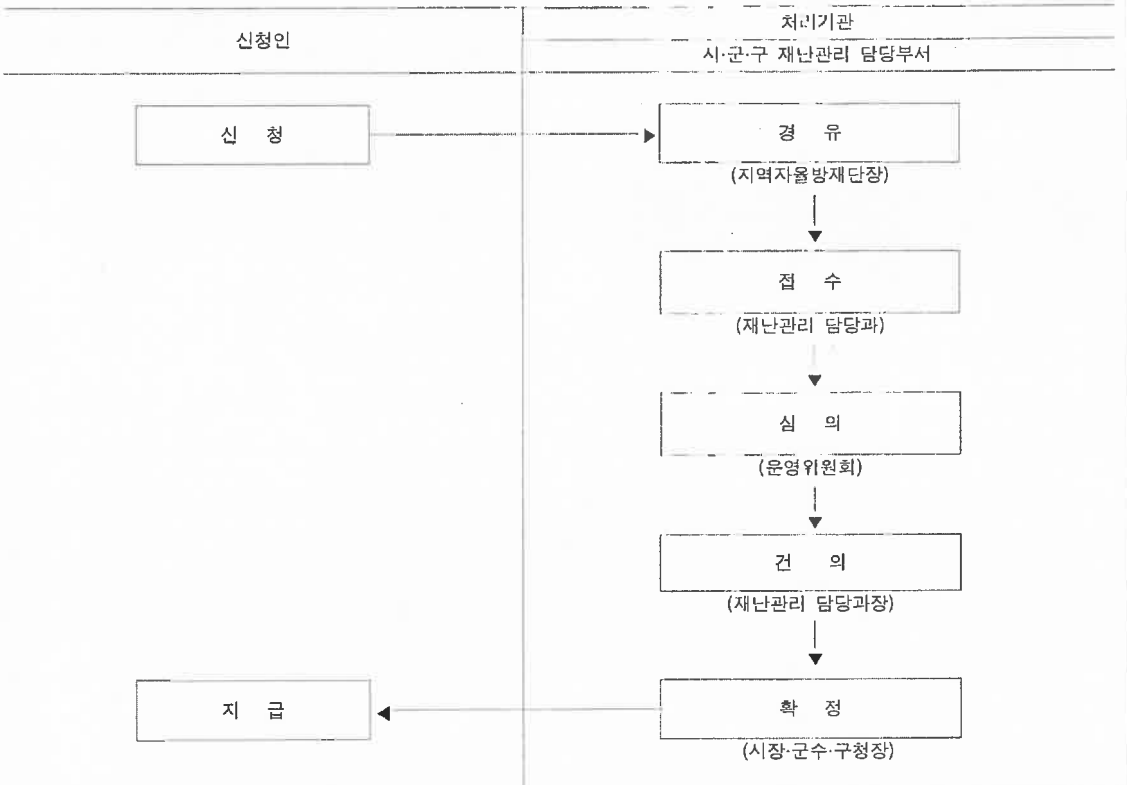

■ 고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별지 제7호서식]

출 입 증 (제12조관련)

출 입 증

사 진
(3×4cm)

고성군 지역자율방재단

← 5.5cm →

지역자율방재단원증

NO. 000 혈액형 O(RH+)형

성 명 :
생년월일 : . . ( )
소 속 :

이 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재난발생 지역에 출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년 월 일

고 성 군 수

↑ 7.7 cm ↓

참고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봉사단체, 방재 관련 업체, 전문가 등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재해 예방, 대응, 복구 활동 등 기여도에 따라 복구사업에 우선 참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대응·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0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운영) ① 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은 시·군·구 단위로 구성·운영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자율방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읍·면·동 단위로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안에서 자연재해 예방에 관심이 많으며 조직 구성 및 운영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로 하여금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을 선도하게 할 수 있다.

③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장(이하 "지역자율방재단장"이라 한다)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互選)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

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62조(교육 및 훈련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원에 대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지역자율방재단원 교육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실시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자율방재단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65조(예산 지원)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지역자율방재단의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실비(實費)로 지급할 수 있다.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에 대한 보상) ① 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보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요양보상
2. 장해보상
3. 장제보상
4. 유족보상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해보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27조의4(전국연합회의 업무) 법 제66조의2에 따른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이하 "전국연합회"라 한다)는 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이하 "지역자율방재단"이라 한다)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2. 지역자율방재단의 현안에 대한 협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공무원 여비 규정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여비는 별표 1의 여비 지급 구분표에 따라 지급한다

□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고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화번호:

○ 의견 내용(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정안	찬반의견		수정안	수정사유
	찬성	반대		

고성군 고시 제2020-182호

하천점용허가(협의) 고시

하천법 제3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점용 허가(협의)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 8. 11.

고 성 군 수

1. 허가번호 : 고성2020-3호

2. 하천의 명칭 : 마암천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성 명 : 고성군(건설과)
   - 주 소 : 경남 고성군·읍 성내로 130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마을쉼터조성(장산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 위치 : 고성군 마암면 장산리 322-16번지외 3필지
   - 면적 : 668㎡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0. 8. 11. ~ 영구

7. 문의처 : 고성군청 안전관리과 하천관리담당 (☎055-670-2763)

고성군 고시 제2020-184호

고성군관리계획(방재시설) 지형도면(변경)에 관한 고시

고성군 공고 제2020-1233호와 관련하여 군관리계획(방재시설)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변경 고시 합니다.

이에 따른 관련도서(토지세목, 지형도면)는 고성군청 안전관리과 및 동해면사무소에 비치하여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0. 8. 18.

고 성 군 수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연장(m)	폭원(m)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231	장항천	소하천	동해면 봉암리 216	동해면 봉암리 139-5		500	-	2,507	고성군고시 제2009-5호 (2009.01.08.)	
변경	231	장항천	소하천	동해면 봉암리 213	동해면 봉암리 139-12		550 (증 50m)	2~5	6,507 (증 4,000㎡)		

첨부서류: 1. 지형도면고시 도면 1부

2. 평부천 하천구역 변경 지번조서 1부

고성군관리계획(방재시설 : 장항소하천) 결정(변경) 조서

❑ 고성군관리계획(방재시설: 하천) 결정(변경) 조서

○ 하천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연장(m)	폭원(m)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231	장항천	소하천	동해면 봉암리 216	동해면 봉암리 139-5		500	-	2,507	고성군고시 제2009-5호 (2009.01.08.)	
변경	231	장항천	소하천	동해면 봉암리 213	동해면 봉암리 139-12		550 (증 50m)	2~5	6,507 (증 4,000㎡)		

○ 하천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231	장항천	• 하천구역 변경 - L= 500m→550m(증 50m) - B= - m→2~5m - A= 2,507㎡ → 6,507㎡(증 4,000㎡)	• 장항소하천의 소하천정비시행계획 수립 및 홍수시 인근 농경지의 침수피해를 예방하고자 당초 연장 500m에서 550m(증 50m)로 연장하고, 하천 면적 2,507㎡에서 6,507㎡(4,000㎡)로 증가되는 사유로 군계획시설(방재시설: 하천)을 변경하고자 함.

고성군 고시 제2020-185호

고성군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8. 14.

고 성 군 수

○ 도로명주소 부여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지참조)					

○ 도로명주소 폐지

도로명주소	폐지고시일	폐지사유
(별지참조)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민원봉사과(☎055-670-2774)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부여

연번	종 전 주 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삼산면 삼봉리 산 81	삼산면 공룡로 1661-6	2020. 8. 14.	건물번호 부여신청	2009 0805	공룡발자국 화석지가 분포되어 있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	
2	하이면 덕호리 1320-13	하이면 덕호1길 50-12	2020. 8. 14.	건물번호 부여신청	2009 0805	행정구역명(하이면덕호리)을이용하는 첫번째 도로	
3	대가면 유흥리 434-3	대가면 대가로 529	2020. 8. 14.	건물번호 부여신청	2009 0805	행정구역명(대가면)을 이용하여 대가로로 명명	
4	영현면 침점리 184-3	영현면 침점2길 73-1	2020. 8. 14.	건물번호 부여신청	2009 0805	행정구역명(영현면침점리)을이용하는 두번째 도로	
5	구만면 화림리 836-3	구만면 저언1길 328	2020. 8. 14.	건물번호 부여신청	2009 1126	행정구역명(구만면저언리)을이용하는 첫번째 도로	
6	구만면 주평리 158-4	구만면 주평2길 93-76	2020. 8. 14.	건물번호 부여신청	2009 1126	행정구역명(구만면주평리)을이용하는 두번째 도로	
7	구만면 용와리 532. 534	구만면 저언1길 22-80	2020. 8. 14.	건물번호 부여신청	2009 1126	행정구역명(구만면저언리)을이용하는 첫번째 도로	
8	거류면 신용리 1223-1	거류면 거류로 598-22	2020. 8. 14.	건물번호 부여신청	2009 0805	행정구역명(거류면)을 이용하여 거류로로 명명	
9	삼산면 병산리 341-1	삼산면 병산1길 173	2020. 8. 14.	건물번호 부여신청	2009 0805	행정구역명(삼산면병산리)을이용하는 첫번째 도로	
10	하이면 석지리 41-1	하이면 석지3길 228	2020. 8. 14.	건물번호 부여신청	2009 0805	행정구역명(하이면석지리)을이용하는 세번째 도로	
11	영오면 오서리 683	영오면 영회로 29-46	2020. 8. 14.	건물번호 부여신청	2009 0805	도로의 시종점인 영오면과 회화면을 연결하는 길임을 반영	
12	영오면 오서리 1230-20	영오면 오서1길 31-47	2020. 8. 14.	건물번호 부여신청	2009 0805	행정구역명(영오면오서리)을이용하는 첫번째 도로	
13	구만면 효락리 470	구만면 구만로 853-11	2020. 8. 14.	건물번호 부여신청	2009 0805	행정구역명(구만면)을 이용하여 구만로로 명명	
14	마암면 삼락리 708-4	마암면 곤기길 76-13	2020. 8. 14.	건물번호 부여신청	2009 1126	지연마을 지명을 활용하여 도로명 부여	
15	거류면 당동리 112. 112-2	거류면 당동6길 30	2020. 8. 14.	건물번호 부여신청	2009 1126	행정구역명(거류면당동리)을이용하는 여섯번째 도로	
16	거류면 당동리 112. 112-2	거류면 당동6길 32	2020. 8. 14.	건물번호 부여신청	2009 1126	행정구역명(거류면당동리)을이용하는 여섯번째 도로	

도로명주소 폐지

연번	관할 구역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일	폐지사유	비고
		도로명	건물번호			
1	구만면	영회로	1761	2020. 08.14.	건축물대장 말소	
2	거류면	거류로	705-28	2020. 08.14.	건축물대장 말소	
3	거류면	당동6길	30	2020. 08.14.	건물신축을 위한 건물 멸실	
4	거류면	당동6길	32	2020. 08.14.	건물신축을 위한 건물 멸실	

고성군 고시 제2020-194호

소하천공사 시행(소하천의 점용·사용) 허가 고시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3항,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7조제3항,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공사 시행(소하천의 점용·사용)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8. 23.

고 성 군 수

시행자 (점용·사용자)	성명	박봉균 외 1인		
	주소	부산시 남구 분포로 145, B동 4002호(용호동,더블유)		
소하천명		두포천		
공사 (점용·사용) 개요	위치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교사리 634-17번지(634-8답 인근)		
	면적	11㎡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
	기간	2020년 9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목적 및 사유	단독주택건립 및 우량농지조성을 위한 진출입로 개설		

열람서류 (안전관리과 비치)

1. 실시설계도서
2. 위치도(축척 5만분의 1 지형도)

고성군 고시 제2020-196호

지적측량 기준점 성과 고시

2020년도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공통점 성과검사가 완료됨에 따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지적측량 기준점 성과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8. 25.

고 성 군 수

1. 기준점 명칭 : 지적도근점(공통점)

2. 직각좌표계의 원점명 : 동부원점

3. 기준점 내역

명 칭	수 량	고시성과	비고
지적도근점	280점	위성(세계)좌표	공통점

4. 고시기간 : 2020. 8. 25. ~ 2020. 9. 9. (15일간)

5. 열람장소 : 경상남도 고성군청 행정복지국 민원봉사과

6. 기 타 : 기준점 성과에 따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고성군청 행정복지국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담당(☎055-670-2184)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지적위성측량성과표 1부. 끝.

2020년도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공통점 위성측량 성과표

순번	기준점		좌표계	경위도 좌표		원점명	평면좌표 (m)		표고 (m)	소재지	설치일	표지 재질	측량성과 보관장소
	명칭	번호		위도	경도		X (m)	Y (m)					
1	공통점 (도근점)	310007	세계	34° 56' 19.1914"	128° 16' 06.2242"	동부 원점	260534.686	133162.746	23.623	삼산면 미룡리 산182-13	2020. 6. 25.	맨홀식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2	공통점 (도근점)	310032	세계	34° 55' 31.8446"	128° 15' 52.9966"	동부 원점	259078.045	132816.341	3.822	삼산면 미룡리 1170	2020. 6. 25.	기타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3	공통점 (도근점)	310036	세계	34° 57' 26.1788"	128° 15' 10.4127"	동부 원점	262609.536	131761.811	32.629	삼산면 삼봉리 296-1	2020. 6. 25.	기타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4	공통점 (도근점)	310037	세계	34° 57' 29.9588"	128° 15' 12.9267"	동부 원점	262725.551	131826.465	32.087	삼산면 삼봉리 999	2020. 6. 25.	기타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5	공통점 (도근점)	310038	세계	34° 57' 21.8377"	128° 15' 13.3911"	동부 원점	262475.190	131836.380	32.257	삼산면 삼봉리 260-3	2020. 6. 25.	기타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6	공통점 (도근점)	310046	세계	34° 56' 40.1645"	128° 14' 43.7755"	동부 원점	261196.564	131075.281	5.304	삼산면 삼봉리 1020-18	2020. 6. 25.	기타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7	공통점 (도근점)	310054	세계	34° 55' 08.6549"	128° 16' 01.9181"	동부 원점	258361.738	133037.548	2.598	삼산면 미룡리 1128-1	2020. 6. 25.	철재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8	공통점 (도근점)	310055	세계	34° 55' 14.3873"	128° 15' 49.9561"	동부 원점	258540.624	132735.211	2.961	삼산면 미룡리 1128-5	2020. 6. 25.	철재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9	공통점 (도근점)	310057	세계	34° 55' 33.4461"	128° 15' 39.9191"	동부 원점	259129.842	132484.779	3.584	삼산면 미룡리 1245-17	2020. 6. 25.	철재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10	공통점 (도근점)	310059	세계	34° 55' 48.2197"	128° 15' 35.1648"	동부 원점	259586.017	132367.476	2.245	삼산면 미룡리 1251-4	2020. 6. 25.	철재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11	공통점 (도근점)	310062	세계	34° 57' 45.7003"	128° 13' 55.2164"	동부 원점	263225.597	129858.570	54.897	삼산면 장치리 864-8	2020. 6. 25.	기타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12	공통점 (도근점)	310063	세계	34° 57' 43.0783"	128° 13' 48.7846"	동부 원점	263146.048	129694.772	52.683	삼산면 장치리 834-4	2020. 6. 25.	철재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13	공통점 (도근점)	310067	세계	34° 57' 41.1035"	128° 13' 21.950"	동부 원점	263090.456	129013.497	73.024	삼산면 장치리 1057-3	2020. 6. 25.	철재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14	공통점 (도근점)	310069	세계	34° 57' 41.3059"	128° 13' 19.8058"	동부 원점	263097.117	128959.145	74.186	삼산면 장치리 1057-3	2020. 6. 25.	철재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15	공통점 (도근점)	310073	세계	34° 57' 41.0047"	128° 13' 08.8942"	동부 원점	263089.992	128682.239	86.726	삼산면 장치리 1070-2	2020. 6. 25.	철재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16	공통점 (도근점)	310074	세계	34° 57' 40.4081"	128° 13' 04.8943"	동부 원점	263072.400	128580.617	89.342	삼산면 장치리 산196-3	2020. 6. 25.	철재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17	공통점 (도근점)	310075	세계	34° 56' 27.860"	128° 14' 55.5809"	동부 원점	260815.118	131372.005	3.302	삼산면 삼봉리 511-7	2020. 6. 25.	철재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18	공통점 (도근점)	310083	세계	34° 56' 08.9497"	128° 16' 19.7496"	동부 원점	260216.559	133503.691	5.815	삼산면 미룡리 945	2020. 6. 25.	철재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순번	기준점		좌표계	경위도 좌표		원점명	평면좌표 (m)		표고 (m)	소재지	설치일	표지 재질	측량성과 보관장소
	명칭	번호		위도	경도		X (m)	Y (m)					
19	공통점 (도근점)	310097	세계	34° 55' 27.7752"	128° 15' 41.8924"	동부 원점	258954.713	132533.574	2.223	삼산면 미룡리 1148-14	2020. 6. 25.	철재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20	공통점 (도근점)	310099	세계	34° 55' 37.6728"	128° 15' 40.9729"	동부 원점	259259.900	132512.486	2.399	삼산면 미룡리 1227-7	2020. 6. 25.	철재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21	공통점 (도근점)	310100	세계	34° 55' 38.2263"	128° 15' 45.7086"	동부 원점	259276.073	132632.810	2.301	삼산면 미룡리 1227-5	2020. 6. 25.	철재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22	공통점 (도근점)	310101	세계	34° 55' 37.6419"	128° 15' 51.6835"	동부 원점	259256.945	132784.325	2.432	삼산면 미룡리 1227-1	2020. 6. 25.	철재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23	공통점 (도근점)	310103	세계	34° 55' 45.0277"	128° 15' 58.0524"	동부 원점	259483.369	132947.644	2.774	삼산면 미룡리 1218-1	2020. 6. 25.	철재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24	공통점 (도근점)	310104	세계	34° 55' 47.8182"	128° 16' 06.6998"	동부 원점	259567.759	133167.747	2.599	삼산면 미룡리 1218-1	2020. 6. 25.	철재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25	공통점 (도근점)	310105	세계	34° 55' 54.8567"	128° 16' 03.6885"	동부 원점	259785.224	133092.907	3.144	삼산면 미룡리 993-6	2020. 6. 25.	철재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26	공통점 (도근점)	310107	세계	34° 56' 01.8210"	128° 16' 06.5278"	동부 원점	259999.321	133166.537	2.980	삼산면 미룡리 989-15	2020. 6. 25.	철재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27	공통점 (도근점)	310109	세계	34° 55' 57.3857"	128° 16' 59.570"	동부 원점	259852.891	134511.711	26.867	삼산면 미룡리 968	2020. 6. 25.	철재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28	공통점 (도근점)	310112	세계	34° 56' 05.3153"	128° 16' 36.5735"	동부 원점	260101.460	133929.843	12.490	삼산면 미룡리 959	2020. 6. 25.	철재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29	공통점 (도근점)	310113	세계	34° 56' 10.2654"	128° 16' 27.7312"	동부 원점	260255.634	133706.543	9.174	삼산면 미룡리 947	2020. 6. 25.	철재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30	공통점 (도근점)	310183	세계	34° 56' 57.2878"	128° 15' 46.6362"	동부 원점	261712.369	132674.304	17.763	삼산면 미룡리 1269-15	2020. 6. 25.	기타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31	공통점 (도근점)	310189	세계	34° 57' 19.6618"	128° 15' 30.7409"	동부 원점	262404.858	132276.084	64.608	삼산면 삼봉리 산12-2	2020. 6. 25.	철재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32	공통점 (도근점)	310192	세계	34° 57' 17.0625"	128° 15' 18.8247"	동부 원점	262327.001	131973.147	34.112	삼산면 삼봉리 산90-10	2020. 6. 25.	철재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33	공통점 (도근점)	310194	세계	34° 57' 11.6381"	128° 15' 10.1064"	동부 원점	262161.487	131750.692	20.416	삼산면 삼봉리 332	2020. 6. 25.	철재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34	공통점 (도근점)	310197	세계	34° 57' 04.0165"	128° 14' 55.9077"	동부 원점	261929.307	131388.664	14.689	삼산면 삼봉리 753-3	2020. 6. 25.	철재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35	공통점 (도근점)	310200	세계	34° 57' 17.5659"	128° 14' 35.4476"	동부 원점	262350.779	130872.678	20.144	삼산면 삼봉리 731	2020. 6. 25.	철재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36	공통점 (도근점)	310201	세계	34° 57' 20.3870"	128° 14' 30.5338"	동부 원점	262438.663	130748.660	23.922	삼산면 삼봉리 1029	2020. 6. 25.	철재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37	공통점 (도근점)	310241	세계	34° 56' 34.1574"	128° 14' 12.1423"	동부 원점	261017.532	130271.153	11.195	삼산면 장치리 610-1	2020. 6. 25.	기타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순번	기준점		좌표계	경위도 좌표		원점명	평면좌표 (m)		표고 (m)	소재지	설치일	표지 재질	측량성과 보관장소
	명칭	번호		위도	경도		X (m)	Y (m)					
38	공통점 (도근점)	310251	세계	34° 56' 47.1848"	128° 13' 23.0207"	동부 원점	261428.600	129027.750	4.202	하일면 용태리 287-5	2020. 6. 1.	철재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39	공통점 (도근점)	310254	세계	34° 56' 49.9018"	128° 13' 08.3271"	동부 원점	261515.235	128655.551	4.669	하일면 용태리 314	2020. 6. 1.	철재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40	공통점 (도근점)	310272	세계	34° 56' 19.0794"	128° 14' 51.5830"	동부 원점	260545.284	131268.516	15.803	삼산면 삼봉리 산103-23	2020. 6. 25.	기타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41	공통점 (도근점)	310297	세계	34° 57' 03.1899"	128° 14' 06.8754"	동부 원점	261913.263	130144.340	7.522	삼산면 장치리 1167	2020. 6. 25.	기타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42	공통점 (도근점)	310298	세계	34° 56' 55.9583"	128° 14' 18.4389"	동부 원점	261688.163	130436.052	2.389	삼산면 장치리 452-1	2020. 6. 25.	기타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43	공통점 (도근점)	310299	세계	34° 56' 58.8326"	128° 15' 04.2411"	동부 원점	261767.968	131598.918	13.043	삼산면 삼봉리 398-4	2020. 6. 25.	기타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44	공통점 (도근점)	310300	세계	34° 56' 36.4421"	128° 14' 15.8164"	동부 원점	261087.228	130364.926	9.096	삼산면 장치리 604	2020. 6. 25.	기타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45	공통점 (도근점)	310301	세계	34° 57' 02.8590"	128° 14' 42.7976"	동부 원점	261896.141	131055.745	12.162	삼산면 삼봉리 993-8	2020. 6. 25.	기타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46	공통점 (도근점)	320005	세계	34° 56' 27.4353"	128° 12' 38.6725"	동부 원점	260828.780	127897.605	2.077	하일면 용태리 699-1	2020. 6. 1.	기타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47	공통점 (도근점)	320013	세계	34° 57' 22.1575"	128° 12' 22.2461"	동부 원점	262518.484	127494.139	34.635	하일면 수양리 576-2	2020. 6. 1.	기타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48	공통점 (도근점)	320014	세계	34° 57' 19.2592"	128° 12' 23.3173"	동부 원점	262428.951	127520.611	31.220	하일면 수양리 572-2	2020. 6. 1.	기타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49	공통점 (도근점)	320016	세계	34° 57' 14.9878"	128° 12' 33.0131"	동부 원점	262295.369	127765.575	23.885	하일면 수양리 474	2020. 6. 1.	기타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50	공통점 (도근점)	320017	세계	34° 57' 12.3747"	128° 12' 36.5502"	동부 원점	262214.128	127854.684	21.953	하일면 수양리 474	2020. 6. 1.	기타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51	공통점 (도근점)	320033	세계	34° 57' 07.8288"	128° 12' 37.9245"	동부 원점	262073.760	127888.449	22.215	하일면 수양리 881	2020. 6. 1.	기타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52	공통점 (도근점)	320043	세계	34° 56' 29.4814"	128° 12' 03.1573"	동부 원점	260898.991	126996.843	3.035	하일면 학림리 1005	2020. 6. 1.	기타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53	공통점 (도근점)	320044	세계	34° 56' 28.1927"	128° 12' 06.0252"	동부 원점	260858.696	127069.305	2.391	하일면 학림리 1005	2020. 6. 1.	기타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54	공통점 (도근점)	320046	세계	34° 56' 34.9953"	128° 11' 43.4886"	동부 원점	261072.918	126499.083	9.961	하일면 학림리 901	2020. 6. 1.	기타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55	공통점 (도근점)	320047	세계	34° 56' 32.9931"	128° 11' 45.5584"	동부 원점	261010.794	126551.112	8.901	하일면 학림리 901	2020. 6. 1.	기타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56	공통점 (도근점)	320048	세계	34° 56' 24.0055"	128° 11' 51.4688"	동부 원점	260732.613	126698.875	4.745	하일면 학림리 900	2020. 6. 1.	기타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순번	기준점		좌표계	경위도 좌표		원점명	평면좌표 (m)		표고 (m)	소재지	설치일	표지 재질	측량성과 보관장소
	명칭	번호		위도	경도		X (m)	Y (m)					
57	공통점 (도근점)	320049	세계	34° 56' 30.8623"	128° 11' 42.0283"	동부 원점	260945.848	126461.003	9.894	하일면 학림리 743	2020. 6. 1.	기타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58	공통점 (도근점)	320050	세계	34° 56' 26.1316"	128° 11' 46.5691"	동부 원점	260799.132	126575.062	6.527	하일면 학림리 742	2020. 6. 1.	기타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59	공통점 (도근점)	320055	세계	34° 56' 38.1991"	128° 11' 24.5328"	동부 원점	261175.534	126018.856	23.152	하일면 학림리 612	2020. 6. 1.	기타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60	공통점 (도근점)	320056	세계	34° 56' 37.1841"	128° 11' 29.1792"	동부 원점	261143.299	126136.509	19.880	하일면 학림리 612	2020. 6. 1.	기타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61	공통점 (도근점)	320061	세계	34° 55' 10.4443"	128° 10' 32.4511"	동부 원점	258481.939	124674.950	26.399	하일면 춘암리 554-18	2020. 6. 2.	기타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62	공통점 (도근점)	320072	세계	34° 54' 48.2126"	128° 10' 34.2817"	동부 원점	257796.431	124715.777	11.776	하일면 춘암리 555	2020. 6. 2.	기타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63	공통점 (도근점)	320073	세계	34° 54' 46.9802"	128° 10' 36.0080"	동부 원점	257758.090	124759.288	10.615	하일면 춘암리 555	2020. 6. 2.	기타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64	공통점 (도근점)	320075	세계	34° 54' 33.5829"	128° 10' 36.2755"	동부 원점	257345.163	124762.685	6.734	하일면 춘암리 867	2020. 6. 2.	기타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65	공통점 (도근점)	320079	세계	34° 57' 17.1761"	128° 12' 54.1665"	동부 원점	262358.576	128302.825	16.173	하일면 수양리 500-1	2020. 6. 1.	기타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66	공통점 (도근점)	320082	세계	34° 57' 35.2578"	128° 12' 52.8194"	동부 원점	262916.079	128273.021	39.849	하일면 수양리 350	2020. 6. 1.	기타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67	공통점 (도근점)	320088	세계	34° 57' 19.2691"	128° 12' 50.8266"	동부 원점	262423.744	128218.591	19.742	하일면 수양리 350	2020. 6. 1.	기타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68	공통점 (도근점)	320089	세계	34° 57' 21.4207"	128° 12' 53.8313"	동부 원점	262489.451	128295.347	22.525	하일면 수양리 350	2020. 6. 1.	기타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69	공통점 (도근점)	320090	세계	34° 56' 49.5738"	128° 12' 35.9687"	동부 원점	261511.576	127834.380	42.429	하일면 용태리 산90-2	2020. 6. 1.	기타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70	공통점 (도근점)	320094	세계	34° 56' 31.5587"	128° 12' 31.3984"	동부 원점	260957.312	127714.015	34.818	하일면 용태리 산99-3	2020. 6. 1.	철재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71	공통점 (도근점)	320095	세계	34° 56' 34.4499"	128° 12' 30.6091"	동부 원점	261046.568	127694.692	44.136	하일면 용태리 산98-1	2020. 6. 1.	기타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72	공통점 (도근점)	320100	세계	34° 54' 05.510"	128° 11' 16.7214"	동부 원점	256471.641	125782.455	2.740	하일면 동화리 399-13	2020. 6. 2.	기타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73	공통점 (도근점)	320101	세계	34° 54' 10.3588"	128° 11' 16.5632"	동부 원점	256621.101	125779.651	2.362	하일면 동화리 399-12	2020. 6. 2.	기타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74	공통점 (도근점)	320102	세계	34° 56' 57.1476"	128° 12' 00.5752"	동부 원점	261752.120	126938.136	16.243	하일면 학림리 210-5	2020. 6. 1.	기타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75	공통점 (도근점)	320106	세계	34° 57' 13.5633"	128° 11' 58.9585"	동부 원점	262258.343	126901.163	27.408	하일면 학림리 1194	2020. 6. 1.	철재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순번	기준점		좌표계	경위도 좌표		원점명	평면좌표 (m)		표고 (m)	소재지	설치일	표지 재질	측량성과 보관장소
	명칭	번호		위도	경도		X (m)	Y (m)					
76	공통점 (도근점)	320107	세계	34° 57' 15.0311"	128° 11' 58.8319"	동부 원점	262303.602	126898.313	27.779	하일면 학림리 1194	2020. 6. 1.	철재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77	공통점 (도근점)	320108	세계	34° 57' 18.0704"	128° 11' 59.0989"	동부 원점	262397.211	126905.838	30.939	하일면 학림리 1194	2020. 6. 1.	철재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78	공통점 (도근점)	320110	세계	34° 57' 23.8728"	128° 12' 00.0065"	동부 원점	262575.844	126930.296	36.063	하일면 학림리 1473-17	2020. 6. 1.	철재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79	공통점 (도근점)	320112	세계	34° 57' 14.8865"	128° 11' 55.2713"	동부 원점	262299.870	126807.933	28.725	하일면 학림리 1196	2020. 6. 1.	철재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80	공통점 (도근점)	320114	세계	34° 56' 32.2709"	128° 12' 36.4942"	동부 원점	260978.240	127843.504	14.722	하일면 용태리 617	2020. 6. 1.	기타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81	공통점 (도근점)	320117	세계	34° 57' 18.4429"	128° 13' 05.2473"	동부 원점	262395.415	128584.278	16.268	하일면 수양리 91	2020. 6. 1.	철재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82	공통점 (도근점)	320119	세계	34° 57' 23.7450"	128° 13' 06.5889"	동부 원점	262558.546	128619.596	21.267	하일면 수양리 80	2020. 6. 1.	철재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83	공통점 (도근점)	320120	세계	34° 57' 30.1116"	128° 13' 12.6865"	동부 원점	262753.542	128775.833	34.981	하일면 수양리 88	2020. 6. 1.	철재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84	공통점 (도근점)	320122	세계	34° 57' 20.5078"	128° 13' 12.2579"	동부 원점	262457.660	128762.651	18.106	하일면 수양리 94	2020. 6. 1.	철재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85	공통점 (도근점)	320124	세계	34° 57' 26.3675"	128° 13' 14.3201"	동부 원점	262637.835	128816.381	31.145	하일면 수양리 92	2020. 6. 1.	철재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86	공통점 (도근점)	320126	세계	34° 57' 24.5409"	128° 13' 15.6691"	동부 원점	262581.275	128850.170	27.215	하일면 수양리 96	2020. 6. 1.	철재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87	공통점 (도근점)	320131	세계	34° 57' 14.1271"	128° 13' 10.0069"	동부 원점	262261.469	128704.004	14.496	하일면 수양리 602	2020. 6. 1.	기타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88	공통점 (도근점)	320145	세계	34° 54' 08.0506"	128° 10' 27.3631"	동부 원점	256560.186	124529.938	2.057	하일면 춘암리 906-2	2020. 6. 2.	철재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89	공통점 (도근점)	320148	세계	34° 54' 30.2364"	128° 10' 28.8239"	동부 원점	257243.589	124572.664	4.580	하일면 춘암리 320-5	2020. 6. 2.	철재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90	공통점 (도근점)	320156	세계	34° 56' 29.8607"	128° 11' 35.2624"	동부 원점	260916.363	126289.057	13.111	하일면 학림리 742	2020. 6. 1.	철재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91	공통점 (도근점)	320157	세계	34° 56' 13.5493"	128° 11' 46.2002"	동부 원점	260411.450	126562.582	2.602	하일면 학림리 385	2020. 6. 1.	철재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92	공통점 (도근점)	320166	세계	34° 55' 28.3860"	128° 12' 00.9011"	동부 원점	259016.641	126924.539	7.815	하일면 송천리 937	2020. 6. 1.	기타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93	공통점 (도근점)	320170	세계	34° 55' 16.1704"	128° 11' 52.3607"	동부 원점	258641.922	126704.750	26.922	하일면 송천리 산74	2020. 6. 1.	철재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94	공통점 (도근점)	320172	세계	34° 55' 10.4205"	128° 11' 52.490"	동부 원점	258464.697	126706.613	31.388	하일면 송천리 578	2020. 6. 1.	기타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순번	기준점		좌표계	경위도 좌표		원점명	평면좌표 (m)		표고 (m)	소재지	설치일	표지 재질	측량성과 보관장소
	명칭	번호		위도	경도		X (m)	Y (m)					
95	공통점 (도근점)	320174	세계	34° 55' 04.6989"	128° 11' 56.0989"	동부 원점	258287.639	126796.808	15.970	하일면 송천리 559-1	2020. 6. 1.	철재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96	공통점 (도근점)	320175	세계	34° 56' 30.0342"	128° 11' 27.8671"	동부 원점	260923.225	126101.431	24.630	하일면 학림리 산210-5	2020. 6. 1.	철재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97	공통점 (도근점)	320176	세계	34° 56' 27.4268"	128° 11' 30.0895"	동부 원점	260842.415	126157.180	29.046	하일면 학림리 589-2	2020. 6. 1.	철재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98	공통점 (도근점)	320178	세계	34° 56' 21.4931"	128° 11' 23.3942"	동부 원점	260660.930	125985.794	44.734	하일면 학림리 산215-2	2020. 6. 1.	철재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99	공통점 (도근점)	320179	세계	34° 56' 16.7308"	128° 11' 18.5038"	동부 원점	260515.171	125860.496	58.539	하일면 학림리 538-2	2020. 6. 1.	맨홀식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100	공통점 (도근점)	320180	세계	34° 56' 11.3796"	128° 11' 21.7015"	동부 원점	260349.604	125940.311	70.897	하일면 학림리 산222-2	2020. 6. 1.	철재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101	공통점 (도근점)	320181	세계	34° 56' 05.8241"	128° 11' 23.6415"	동부 원점	260177.998	125988.160	82.801	하일면 학림리 산226-5	2020. 6. 1.	철재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102	공통점 (도근점)	320182	세계	34° 56' 03.1141"	128° 11' 24.0794"	동부 원점	260094.390	125998.596	85.138	하일면 송천리 산38-1	2020. 6. 1.	철재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103	공통점 (도근점)	320185	세계	34° 56' 08.1191"	128° 10' 53.7076"	동부 원점	260254.905	125229.051	60.048	하일면 오방리 625	2020. 6. 1.	철재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104	공통점 (도근점)	320189	세계	34° 54' 08.7476"	128° 09' 57.9615"	동부 원점	256587.850	123783.643	1.988	하일면 춘암리 780-4	2020. 6. 2.	철재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105	공통점 (도근점)	320191	세계	34° 54' 06.4175"	128° 10' 08.1957"	동부 원점	256513.883	124042.882	2.246	하일면 춘암리 780-4	2020. 6. 2.	철재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106	공통점 (도근점)	320196	세계	34° 54' 59.3148"	128° 11' 51.7834"	동부 원점	258122.592	126685.933	13.540	하일면 송천리 산92-1	2020. 6. 1.	철재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107	공통점 (도근점)	320197	세계	34° 54' 55.9867"	128° 11' 54.3575"	동부 원점	258019.503	126750.455	15.422	하일면 송천리 산93-1	2020. 6. 1.	철재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108	공통점 (도근점)	320199	세계	34° 54' 47.2135"	128° 11' 47.4225"	동부 원점	257750.548	126572.241	11.389	하일면 송천리 산111-4	2020. 6. 1.	맨홀식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109	공통점 (도근점)	320200	세계	34° 54' 45.0857"	128° 11' 46.1427"	동부 원점	257685.234	126539.224	16.868	하일면 동화리 산39-2	2020. 6. 1.	철재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110	공통점 (도근점)	320202	세계	34° 54' 35.2989"	128° 11' 50.6670"	동부 원점	257382.712	126651.659	3.667	하일면 동화리 산41	2020. 6. 1.	철재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111	공통점 (도근점)	320209	세계	34° 56' 27.5438"	128° 12' 06.9883"	동부 원점	260838.504	127093.586	2.346	하일면 학림리 996	2020. 6. 1.	철재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112	공통점 (도근점)	320211	세계	34° 56' 15.1115"	128° 11' 47.3279"	동부 원점	260459.364	126591.589	2.436	하일면 학림리 380-12	2020. 6. 1.	철재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113	공통점 (도근점)	320213	세계	34° 56' 17.9676"	128° 11' 58.7311"	동부 원점	260545.062	126881.682	2.652	하일면 학림리 1512-2	2020. 6. 1.	철재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순번	기준점		좌표계	경위도 좌표		원점명	평면좌표 (m)		표고 (m)	소재지	설치일	표지 재질	측량성과 보관장소
	명칭	번호		위도	경도		X (m)	Y (m)					
114	공통점 (도근점)	320216	세계	34° 56' 24.8638"	128° 12' 13.2450"	동부 원점	260754.645	127251.705	4.017	하일면 학림리 1531	2020. 6. 1.	철재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115	공통점 (도근점)	320219	세계	34° 56' 32.3935"	128° 11' 51.5442"	동부 원점	260991.094	126702.860	8.779	하일면 학림리 332-2	2020. 6. 1.	맨홀식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116	공통점 (도근점)	320226	세계	34° 54' 22.8695"	128° 11' 14.9919"	동부 원점	257006.974	125742.884	2.356	하일면 동화리 386-12	2020. 6. 1.	철재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117	공통점 (도근점)	320235	세계	34° 57' 19.2692"	128° 11' 27.9076"	동부 원점	262440.524	126114.731	45.179	하일면 학림리 340	2020. 6. 1.	철재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118	공통점 (도근점)	320236	세계	34° 57' 18.2912"	128° 11' 33.1398"	동부 원점	262409.312	126247.243	42.602	하일면 학림리 393	2020. 6. 1.	철재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119	공통점 (도근점)	320253	세계	34° 56' 47.0385"	128° 11' 23.9490"	동부 원점	261448.062	126006.247	25.441	하일면 학림리 798-5	2020. 6. 1.	철재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120	공통점 (도근점)	320254	세계	34° 56' 44.2841"	128° 11' 21.9503"	동부 원점	261363.588	125954.843	30.782	하일면 학림리 791	2020. 6. 1.	기타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121	공통점 (도근점)	320255	세계	34° 56' 41.7748"	128° 11' 25.3694"	동부 원점	261285.556	126040.978	23.610	하일면 학림리 730-20	2020. 6. 1.	철재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122	공통점 (도근점)	320256	세계	34° 56' 39.3092"	128° 11' 29.9191"	동부 원점	261208.639	126155.814	20.457	하일면 학림리 731-4	2020. 6. 1.	철재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123	공통점 (도근점)	320259	세계	34° 56' 33.9347"	128° 11' 44.4253"	동부 원점	261040.040	126522.590	9.572	하일면 학림리 901	2020. 6. 1.	철재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124	공통점 (도근점)	320261	세계	34° 56' 27.7810"	128° 11' 50.6109"	동부 원점	260849.137	126678.038	6.570	하일면 학림리 775-15	2020. 6. 1.	철재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125	공통점 (도근점)	320262	세계	34° 56' 25.3513"	128° 11' 53.4173"	동부 원점	260773.689	126748.655	5.446	하일면 학림리 901	2020. 6. 1.	철재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126	공통점 (도근점)	320263	세계	34° 56' 22.6587"	128° 11' 54.9073"	동부 원점	260690.409	126785.803	3.449	하일면 학림리 359-1	2020. 6. 1.	철재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127	공통점 (도근점)	320264	세계	34° 56' 25.0066"	128° 11' 55.6512"	동부 원점	260762.612	126805.260	3.566	하일면 학림리 358-3	2020. 6. 1.	철재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128	공통점 (도근점)	320265	세계	34° 56' 25.8373"	128° 11' 57.2620"	동부 원점	260787.886	126846.342	3.982	하일면 학림리 332-2	2020. 6. 1.	맨홀식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129	공통점 (도근점)	320267	세계	34° 56' 01.5966"	128° 11' 45.1098"	동부 원점	260043.322	126531.950	12.336	하일면 송천리 221-2	2020. 6. 1.	철재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130	공통점 (도근점)	320270	세계	34° 55' 54.8275"	128° 11' 42.9548"	동부 원점	259835.153	126475.580	12.997	하일면 송천리 산33-4	2020. 6. 1.	철재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131	공통점 (도근점)	320272	세계	34° 55' 52.3745"	128° 11' 50.6348"	동부 원점	259757.991	126669.891	7.156	하일면 송천리 239	2020. 6. 1.	기타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132	공통점 (도근점)	320274	세계	34° 55' 47.6306"	128° 11' 50.8107"	동부 원점	259611.759	126673.183	15.192	하일면 송천리 295-1	2020. 6. 1.	철재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순번	기준점		좌표계	경위도 좌표		원점명	평면좌표 (m)		표고 (m)	소재지	설치일	표지 재질	측량성과 보관장소
	명칭	번호		위도	경도		X (m)	Y (m)					
133	공통점 (도근점)	320275	세계	34° 55' 45.4951"	128° 11' 49.0940"	동부 원점	259546.300	126629.085	19.043	하일면 송천리 295-9	2020. 6. 1.	철제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134	공통점 (도근점)	320280	세계	34° 55' 35.2248"	128° 11' 54.4362"	동부 원점	259228.707	126762.136	26.146	하일면 송천리 409-2	2020. 6. 1.	철제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135	공통점 (도근점)	320282	세계	34° 55' 35.5760"	128° 12' 02.1907"	동부 원점	259237.955	126959.043	8.366	하일면 송천리 440-8	2020. 6. 1.	철제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136	공통점 (도근점)	320283	세계	34° 55' 32.5831"	128° 12' 01.8423"	동부 원점	259145.792	126949.461	6.924	하일면 송천리 438-8	2020. 6. 1.	철제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137	공통점 (도근점)	320285	세계	34° 55' 20.4059"	128° 11' 57.3611"	동부 원점	258771.431	126832.720	9.536	하일면 송천리 468-5	2020. 6. 1.	철제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138	공통점 (도근점)	320286	세계	34° 55' 15.3647"	128° 11' 57.3629"	동부 원점	258616.075	126831.523	14.854	하일면 송천리 535-3	2020. 6. 1.	맨홀식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139	공통점 (도근점)	320287	세계	34° 55' 11.5192"	128° 11' 57.6102"	동부 원점	258497.514	126836.851	17.632	하일면 송천리 948	2020. 6. 1.	철재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140	공통점 (도근점)	320288	세계	34° 55' 15.7168"	128° 11' 51.9282"	동부 원점	258628.031	126693.659	27.572	하일면 송천리 산74	2020. 6. 1.	철재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141	공통점 (도근점)	320295	세계	34° 54' 44.8790"	128° 11' 40.5730"	동부 원점	257680.001	126397.785	29.024	하일면 동화리 산39-2	2020. 6. 1.	철재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142	공통점 (도근점)	320296	세계	34° 54' 43.3799"	128° 11' 41.0938"	동부 원점	257633.698	126410.634	31.580	하일면 동화리 산36-2	2020. 6. 1.	철재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143	공통점 (도근점)	320299	세계	34° 54' 34.9185"	128° 11' 42.5032"	동부 원점	257372.652	126444.314	51.475	하일면 동화리 산43	2020. 6. 1.	철재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144	공통점 (도근점)	320300	세계	34° 54' 34.8661"	128° 11' 39.6513"	동부 원점	257371.618	126371.903	54.763	하일면 동화리 산45-1	2020. 6. 1.	철재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145	공통점 (도근점)	320301	세계	34° 54' 35.4326"	128° 11' 35.4514"	동부 원점	257389.936	126265.421	43.778	하일면 동화리 275-2	2020. 6. 1.	철재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146	공통점 (도근점)	320302	세계	34° 54' 33.8887"	128° 11' 30.4279"	동부 원점	257343.384	126137.510	28.201	하일면 동화리 산46-1	2020. 6. 1.	철재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147	공통점 (도근점)	320304	세계	34° 54' 28.4612"	128° 11' 23.5085"	동부 원점	257177.543	125960.495	10.869	하일면 동화리 317-2	2020. 6. 1.	철재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148	공통점 (도근점)	320367	세계	34° 56' 56.0473"	128° 13' 00.8813"	동부 원점	261706.103	128468.098	8.545	하일면 용태리 290	2020. 6. 1.	철재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149	공통점 (도근점)	320368	세계	34° 56' 58.4898"	128° 13' 09.3524"	동부 원점	261779.695	128683.636	6.702	하일면 용태리 294	2020. 6. 1.	기타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150	공통점 (도근점)	320369	세계	34° 57' 32.0367"	128° 12' 54.1199"	동부 원점	262816.553	128305.237	34.051	하일면 수양리 350	2020. 6. 1.	기타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151	공통점 (도근점)	330041	세계	34° 55' 41.5084"	128° 07' 27.0647"	동부 원점	259479.230	119977.558	9.921	하이면 덕호리 101-2	2020. 6. 2.	철재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순번	기준점		좌표계	경위도 좌표		원점명	평면좌표 (m)		표고 (m)	소재지	설치일	표지 재질	측량성과 보관장소
	명칭	번호		위도	경도		X (m)	Y (m)					
152	공통점 (도근점)	330046	세계	34° 55' 33.7650"	128° 07' 47.1703"	동부 원점	259236.144	120485.783	11.477	하이면 덕호리 60-11	2020. 6. 2.	철재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153	공통점 (도근점)	330060	세계	34° 55' 39.6888"	128° 08' 00.4988"	동부 원점	259415.765	120825.662	18.818	하이면 사곡리 516-3	2020. 6. 2.	철재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154	공통점 (도근점)	330061	세계	34° 55' 35.6902"	128° 07' 56.6647"	동부 원점	259293.383	120727.280	16.431	하이면 사곡리 516-3	2020. 6. 2.	철재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155	공통점 (도근점)	330064	세계	34° 54' 56.9999"	128° 08' 20.0533"	동부 원점	258095.912	121310.658	30.102	하이면 월흥리 1514-7	2020. 6. 2.	철재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156	공통점 (도근점)	330065	세계	34° 54' 58.7205"	128° 08' 21.9603"	동부 원점	258148.520	121359.523	26.047	하이면 월흥리 1517-2	2020. 6. 2.	철재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157	공통점 (도근점)	330068	세계	34° 55' 07.8901"	128° 08' 34.9512"	동부 원점	258428.274	121691.710	24.431	하이면 월흥리 1227-2	2020. 6. 2.	철재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158	공통점 (도근점)	330074	세계	34° 55' 17.7256"	128° 08' 11.5664"	동부 원점	258736.483	121100.729	16.755	하이면 월흥리 1500-2	2020. 6. 2.	맨홀식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159	공통점 (도근점)	330083	세계	34° 55' 49.1397"	128° 08' 33.0320"	동부 원점	259699.908	121653.887	40.786	하이면 사곡리 514-4	2020. 6. 2.	철재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160	공통점 (도근점)	330091	세계	34° 55' 31.6268"	128° 08' 03.3068"	동부 원점	259166.696	120894.782	15.622	하이면 사곡리 516-7	2020. 6. 2.	철재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161	공통점 (도근점)	330093	세계	34° 55' 38.1198"	128° 08' 07.5490"	동부 원점	259365.867	121004.185	20.012	하이면 사곡리 516-7	2020. 6. 2.	철재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162	공통점 (도근점)	330095	세계	34° 55' 44.4504"	128° 08' 13.2694"	동부 원점	259559.705	121151.058	25.965	하이면 사곡리 516-5	2020. 6. 2.	철재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163	공통점 (도근점)	330100	세계	34° 55' 34.5961"	128° 07' 26.5724"	동부 원점	259266.317	119963.198	4.969	하이면 덕호리 586-3	2020. 6. 2.	철재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164	공통점 (도근점)	330104	세계	34° 55' 30.0896"	128° 07' 39.0288"	동부 원점	259124.677	120278.151	8.502	하이면 덕호리 587-5	2020. 6. 2.	기타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165	공통점 (도근점)	330106	세계	34° 55' 34.2697"	128° 07' 37.5841"	동부 원점	259253.817	120242.605	6.704	하이면 덕호리 587-3	2020. 6. 2.	철재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166	공통점 (도근점)	330107	세계	34° 55' 35.9066"	128° 07' 32.0752"	동부 원점	259305.484	120103.219	7.627	하이면 덕호리 586-5	2020. 6. 2.	철재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167	공통점 (도근점)	330110	세계	34° 55' 25.1436"	128° 07' 50.9641"	동부 원점	258969.616	120579.767	10.854	하이면 사곡리 521	2020. 6. 2.	철재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168	공통점 (도근점)	330122	세계	34° 55' 04.4563"	128° 08' 15.8622"	동부 원점	258326.614	121206.247	21.047	하이면 월흥리 1514-5	2020. 6. 2.	철재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169	공통점 (도근점)	330123	세계	34° 55' 06.4648"	128° 08' 12.0350"	동부 원점	258389.349	121109.630	20.091	하이면 월흥리 1618-9	2020. 6. 2.	철재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170	공통점 (도근점)	330125	세계	34° 55' 06.0883"	128° 08' 03.5066"	동부 원점	258379.616	120893.046	25.372	하이면 월흥리 1516-5	2020. 6. 2.	기타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순번	기준점		좌표계	경위도 좌표		원점명	평면좌표 (m)		표고 (m)	소재지	설치일	표지 재질	측량성과 보관장소
	명칭	번호		위도	경도		X (m)	Y (m)					
171	공통점 (도근점)	330148	세계	34° 56' 27.1048"	128° 08' 21.4009"	동부 원점	260872.440	121368.751	49.367	하이면 석지리 777	2020. 6. 2.	철재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172	공통점 (도근점)	330150	세계	34° 56' 27.1531"	128° 08' 14.3584"	동부 원점	260875.468	121190.046	44.062	하이면 석지리 777	2020. 6. 2.	철재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173	공통점 (도근점)	330151	세계	34° 56' 27.8440"	128° 08' 12.2573"	동부 원점	260897.219	121136.909	42.541	하이면 석지리 777	2020. 6. 2.	철재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174	공통점 (도근점)	330165	세계	34° 56' 02.0381"	128° 07' 26.3757"	동부 원점	260112.060	119965.609	19.657	하이면 덕호리 190	2020. 6. 2.	기타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175	공통점 (도근점)	330169	세계	34° 56' 01.6575"	128° 07' 21.5258"	동부 원점	260101.410	119842.418	15.657	하이면 덕호리 267-1	2020. 6. 2.	철재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176	공통점 (도근점)	330173	세계	34° 56' 14.8745"	128° 07' 30.0955"	동부 원점	260506.824	120063.475	22.429	하이면 석지리 810	2020. 6. 2.	철재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177	공통점 (도근점)	330176	세계	34° 56' 21.0601"	128° 07' 33.6288"	동부 원점	260696.668	120154.809	24.247	하이면 석지리 659	2020. 6. 2.	철재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178	공통점 (도근점)	330178	세계	34° 56' 26.8717"	128° 07' 33.7403"	동부 원점	260875.744	120159.202	25.875	하이면 석지리 652	2020. 6. 2.	철재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179	공통점 (도근점)	330183	세계	34° 56' 39.4237"	128° 07' 29.3744"	동부 원점	261263.535	120051.793	29.657	하이면 석지리 639	2020. 6. 2.	철재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180	공통점 (도근점)	330188	세계	34° 56' 43.8566"	128° 07' 41.9707"	동부 원점	261397.357	120372.629	33.450	하이면 석지리 636	2020. 6. 2.	철재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181	공통점 (도근점)	330189	세계	34° 56' 31.0818"	128° 07' 39.2033"	동부 원점	261004.278	120298.968	28.663	하이면 석지리 617	2020. 6. 2.	철재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182	공통점 (도근점)	330195	세계	34° 56' 25.8622"	128° 07' 51.3478"	동부 원점	260840.740	120605.759	31.688	하이면 석지리 759	2020. 6. 2.	철재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183	공통점 (도근점)	330209	세계	34° 56' 31.6588"	128° 08' 24.0737"	동부 원점	261012.201	121437.785	51.829	하이면 석지리 77	2020. 6. 2.	철재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184	공통점 (도근점)	330215	세계	34° 56' 21.1276"	128° 07' 50.0724"	동부 원점	260695.112	120572.126	29.061	하이면 석지리 762	2020. 6. 2.	철재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185	공통점 (도근점)	330216	세계	34° 56' 18.6499"	128° 07' 44.5280"	동부 원점	260619.977	120430.757	27.237	하이면 석지리 762	2020. 6. 2.	철재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186	공통점 (도근점)	330217	세계	34° 56' 16.6122"	128° 07' 39.9694"	동부 원점	260558.188	120314.523	25.130	하이면 석지리 762	2020. 6. 2.	철재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187	공통점 (도근점)	330219	세계	34° 56' 10.7936"	128° 07' 31.7694"	동부 원점	260380.689	120104.856	20.722	하이면 석지리 804	2020. 6. 2.	철재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188	공통점 (도근점)	330221	세계	34° 56' 04.1199"	128° 07' 25.8983"	동부 원점	260176.325	119954.055	18.448	하이면 덕호리 269	2020. 6. 2.	철재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189	공통점 (도근점)	330223	세계	34° 56' 22.0824"	128° 07' 42.9187"	동부 원점	260726.115	120390.837	28.431	하이면 석지리 759	2020. 6. 2.	철재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순번	기준점		좌표계	경위도 좌표		원점명	평면좌표 (m)		표고 (m)	소재지	설치일	표지 재질	측량성과 보관장소
	명칭	번호		위도	경도		X (m)	Y (m)					
190	공통점 (도근점)	330225	세계	34° 56' 24.3867"	128° 07' 46.1402"	동부 원점	260796.415	120473.210	29.908	하이면 석지라 757	2020. 6. 2.	철재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191	공통점 (도근점)	330227	세계	34° 56' 27.5716"	128° 07' 45.7344"	동부 원점	260894.659	120463.765	29.484	하이면 석지리 750	2020. 6. 2.	철재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192	공통점 (도근점)	330229	세계	34° 56' 24.3753"	128° 07' 38.6002"	동부 원점	260797.734	120281.863	25.742	하이면 석지리 779-13	2020. 6. 2.	철재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193	공통점 (도근점)	330231	세계	34° 56' 35.3526"	128° 07' 37.2190"	동부 원점	261136.334	120249.763	29.495	하이면 석지리 636	2020. 6. 2.	철재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194	공통점 (도근점)	330232	세계	34° 56' 35.7285"	128° 07' 33.0035"	동부 원점	261148.854	120142.890	27.825	하이면 석지리 643	2020. 6. 2.	철재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195	공통점 (도근점)	330233	세계	34° 56' 39.9402"	128° 07' 39.0968"	동부 원점	261277.298	120298.647	31.544	하이면 석지리 636	2020. 6. 2.	철재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196	공통점 (도근점)	330268	세계	34° 56' 59.5315"	128° 08' 14.6519"	동부 원점	261873.234	121206.100	65.700	하이면 와룡리 산133-4	2020. 6. 25.	맨홀식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197	공통점 (도근점)	330271	세계	34° 57' 03.1362"	128° 08' 07.2081"	동부 원점	261985.954	121018.180	50.588	하이면 봉현리 118-1	2020. 6. 2.	철재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198	공통점 (도근점)	330275	세계	34° 57' 03.9978"	128° 07' 54.6086"	동부 원점	262015.275	120698.709	45.627	하이면 봉현리 315	2020. 6. 2.	철재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199	공통점 (도근점)	330279	세계	34° 57' 04.6621"	128° 07' 59.3178"	동부 원점	262034.710	120818.379	46.746	하이면 봉현리 328-7	2020. 6. 2.	철재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200	공통점 (도근점)	330283	세계	34° 57' 07.9222"	128° 07' 47.0058"	동부 원점	262137.892	120506.851	45.392	하이면 봉현리 307	2020. 6. 2.	철재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201	공통점 (도근점)	330288	세계	34° 57' 12.2746"	128° 07' 39.9057"	동부 원점	262273.594	120327.864	47.227	하이면 봉현리 258-2	2020. 6. 2.	철재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202	공통점 (도근점)	330292	세계	34° 56' 17.2878"	128° 07' 31.3492"	동부 원점	260580.917	120095.940	23.428	하이면 석지리 779-13	2020. 6. 2.	철재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203	공통점 (도근점)	330293	세계	34° 56' 14.0638"	128° 07' 29.3502"	동부 원점	260482.005	120044.342	22.567	하이면 석지리 539-2	2020. 6. 2.	철재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204	공통점 (도근점)	330295	세계	34° 56' 05.8532"	128° 07' 22.8854"	동부 원점	260230.410	119878.058	18.179	하이면 덕호리 263-2	2020. 6. 2.	철재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205	공통점 (도근점)	330296	세계	34° 56' 03.2703"	128° 07' 20.8541"	동부 원점	260151.264	119825.809	16.697	하이면 덕호리 263-2	2020. 6. 2.	철재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206	공통점 (도근점)	330298	세계	34° 55' 58.5792"	128° 07' 16.9024"	동부 원점	260007.573	119724.247	13.280	하이면 덕호리 388	2020. 6. 2.	철재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207	공통점 (도근점)	330302	세계	34° 56' 00.9386"	128° 07' 04.9784"	동부 원점	260082.948	119422.262	11.618	하이면 덕호리 352-1	2020. 6. 2.	기타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208	공통점 (도근점)	330306	세계	34° 56' 08.0260"	128° 07' 04.9507"	동부 원점	260301.371	119423.486	13.725	하이면 덕호리 368	2020. 6. 2.	철재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순번	기준점		좌표계	경위도 좌표		원점명	평면좌표 (m)		표고 (m)	소재지	설치일	표지 재질	측량성과 보관장소
	명칭	번호		위도	경도		X (m)	Y (m)					
209	공통점 (도근점)	330310	세계	34° 56' 15.7014"	128° 07' 13.1172"	동부 원점	260536.088	119632.820	17.811	하이면 석지리 738	2020. 6. 2.	철재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210	공통점 (도근점)	330311	세계	34° 56' 16.7361"	128° 07' 17.6372"	동부 원점	260566.966	119747.810	18.351	하이면 석지리 746	2020. 6. 2.	철재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211	공통점 (도근점)	330313	세계	34° 56' 13.0388"	128° 07' 20.9568"	동부 원점	260452.284	119831.054	17.992	하이면 석지리 819	2020. 6. 2.	철재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212	공통점 (도근점)	330316	세계	34° 56' 13.6248"	128° 07' 14.1296"	동부 원점	260471.865	119657.952	16.488	하이면 석지리 742	2020. 6. 2.	철재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213	공통점 (도근점)	330317	세계	34° 56' 11.2036"	128° 07' 12.3253"	동부 원점	260397.652	119611.505	15.998	하이면 덕호리 366	2020. 6. 2.	철재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214	공통점 (도근점)	330321	세계	34° 56' 05.6955"	128° 07' 08.0832"	동부 원점	260228.850	119502.352	13.372	하이면 덕호리 369	2020. 6. 2.	철재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215	공통점 (도근점)	330323	세계	34° 56' 06.6705"	128° 07' 13.2497"	동부 원점	260257.743	119633.736	15.071	하이면 덕호리 370	2020. 6. 2.	철재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216	공통점 (도근점)	330336	세계	34° 57' 57.8324"	128° 08' 09.7257"	동부 원점	263671.018	121096.625	81.418	하이면 봉현리 556	2020. 6. 25.	철재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217	공통점 (도근점)	330348	세계	34° 57' 29.2007"	128° 08' 01.2322"	동부 원점	262790.517	120873.506	61.474	하이면 봉현리 753-14	2020. 6. 25.	철재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218	공통점 (도근점)	330349	세계	34° 57' 27.9725"	128° 07' 58.9176"	동부 원점	262753.175	120814.452	58.752	하이면 봉현리 745-15	2020. 6. 25.	철재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219	공통점 (도근점)	330350	세계	34° 57' 27.0986"	128° 08' 02.7420"	동부 원점	262725.403	120911.251	59.419	하이면 봉현리 629	2020. 6. 25.	철재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220	공통점 (도근점)	330358	세계	34° 57' 21.1389"	128° 08' 00.6655"	동부 원점	262542.193	120856.975	55.318	하이면 봉현리 632	2020. 6. 25.	철재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221	공통점 (도근점)	330359	세계	34° 57' 25.3176"	128° 08' 01.7318"	동부 원점	262670.738	120885.146	58.697	하이면 봉현리 629	2020. 6. 25.	철재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222	공통점 (도근점)	330360	세계	34° 57' 17.4890"	128° 07' 55.5550"	동부 원점	262430.837	120726.333	53.062	하이면 봉현리 632	2020. 6. 25.	철재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223	공통점 (도근점)	330363	세계	34° 57' 34.7142"	128° 07' 58.8208"	동부 원점	262960.961	120813.798	63.768	하이면 봉현리 590	2020. 6. 25.	철재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224	공통점 (도근점)	330366	세계	34° 57' 42.6233"	128° 08' 00.6918"	동부 원점	263204.291	120863.381	69.651	하이면 봉현리 584	2020. 6. 25.	철재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225	공통점 (도근점)	330369	세계	34° 57' 58.1067"	128° 08' 05.7200"	동부 원점	263680.351	120995.077	81.877	하이면 봉현리 552	2020. 6. 25.	철재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226	공통점 (도근점)	330373	세계	34° 57' 59.7730"	128° 08' 02.6580"	동부 원점	263732.375	120917.842	82.565	하이면 봉현리 544-6	2020. 6. 25.	철재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227	공통점 (도근점)	330374	세계	34° 58' 02.2571"	128° 08' 04.1251"	동부 원점	263808.606	120955.722	84.258	하이면 봉현리 549	2020. 6. 25.	철재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순번	기준점		좌표계	경위도 좌표		원점명	평면좌표 (m)		표고 (m)	소재지	설치일	표지 재질	측량성과 보관장소
	명칭	번호		위도	경도		X (m)	Y (m)					
228	공통점 (도근점)	330376	세계	34° 57' 39.7435"	128° 08' 04.3929"	동부 원점	263114.728	120956.511	68.248	하이면 봉현리 583	2020. 6. 25.	철재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229	공통점 (도근점)	330380	세계	34° 56' 59.0476"	128° 07' 34.4010"	동부 원점	261867.186	120184.632	40.716	하이면 봉현리 151-13	2020. 6. 2.	철재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230	공통점 (도근점)	330381	세계	34° 56' 59.3063"	128° 07' 37.5121"	동부 원점	261874.469	120263.643	40.081	하이면 봉현리 233	2020. 6. 2.	철재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231	공통점 (도근점)	330383	세계	34° 57' 04.840"	128° 07' 40.1479"	동부 원점	262044.424	120332.013	42.490	하이면 봉현리 233	2020. 6. 2.	철재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232	공통점 (도근점)	330388	세계	34° 56' 47.7392"	128° 07' 44.9454"	동부 원점	261516.353	120449.154	35.811	하이면 석지리 286	2020. 6. 2.	철재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233	공통점 (도근점)	330391	세계	34° 56' 48.6340"	128° 07' 39.3795"	동부 원점	261545.158	120308.159	35.795	하이면 석지리 281	2020. 6. 2.	철재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234	공통점 (도근점)	330474	세계	34° 55' 38.4747"	128° 07' 25.4222"	동부 원점	259386.104	119935.049	9.435	하이면 덕호리 569	2020. 6. 2.	기타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235	공통점 (도근점)	330478	세계	34° 55' 14.1040"	128° 08' 15.4717"	동부 원점	258624.019	121198.895	18.075	하이면 월흥리 1408-2	2020. 6. 2.	맨홀식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236	공통점 (도근점)	330504	세계	34° 55' 23.4306"	128° 08' 53.9918"	동부 원점	258903.069	122179.110	37.349	하이면 월흥리 1034-1	2020. 6. 2.	철재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237	공통점 (도근점)	330505	세계	34° 55' 17.7045"	128° 08' 44.1436"	동부 원점	258728.735	121927.631	30.722	하이면 월흥리 575	2020. 6. 2.	철재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238	공통점 (도근점)	330508	세계	34° 55' 13.5051"	128° 08' 37.9486"	동부 원점	258600.664	121769.275	25.234	하이면 월흥리 1028	2020. 6. 2.	철재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239	공통점 (도근점)	330509	세계	34° 55' 14.2025"	128° 08' 33.7953"	동부 원점	258623.060	121664.034	25.872	하이면 월흥리 1185	2020. 6. 2.	철재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240	공통점 (도근점)	330514	세계	34° 55' 17.3481"	128° 08' 50.5390"	동부 원점	258716.367	122089.872	33.732	하이면 월흥리 산170-1	2020. 6. 2.	맨홀식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241	공통점 (도근점)	330517	세계	34° 55' 20.3471"	128° 09' 07.4496"	동부 원점	258805.145	122519.895	38.360	하이면 월흥리 1053-1	2020. 6. 2.	철재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242	공통점 (도근점)	330522	세계	34° 55' 11.2651"	128° 09' 27.5837"	동부 원점	258520.943	123028.598	66.190	하이면 월흥리 566-3	2020. 6. 2.	철재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243	공통점 (도근점)	330525	세계	34° 55' 15.5927"	128° 09' 27.2087"	동부 원점	258654.388	123020.202	58.388	하이면 월흥리 577-4	2020. 6. 2.	철재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244	공통점 (도근점)	330533	세계	34° 55' 51.8407"	128° 07' 19.3413"	동부 원점	259799.364	119784.322	12.135	하이면 덕호리 491-3	2020. 6. 2.	철재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245	공통점 (도근점)	330534	세계	34° 55' 47.8387"	128° 07' 20.2180"	동부 원점	259675.837	119805.492	10.844	하이면 덕호리 513-1	2020. 6. 2.	철재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246	공통점 (도근점)	330536	세계	34° 55' 38.8469"	128° 07' 20.6919"	동부 원점	259398.625	119815.091	6.783	하이면 덕호리 624-5	2020. 6. 2.	철재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순번	기준점		좌표계	경위도 좌표		원점명	평면좌표 (m)		표고 (m)	소재지	설치일	표지 재질	측량성과 보관장소
	명칭	번호		위도	경도		X (m)	Y (m)					
247	공통점 (도근점)	330538	세계	34° 55' 28.9579"	128° 07' 21.0510"	동부 원점	259093.789	119821.531	4.499	하이면 덕호리 732-7	2020. 6. 2.	기타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248	공통점 (도근점)	330539	세계	34° 55' 25.4330"	128° 07' 22.4558"	동부 원점	258984.849	119856.236	4.355	하이면 덕호리 729-4	2020. 6. 2.	기타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249	공통점 (도근점)	330541	세계	34° 55' 15.7598"	128° 07' 22.3093"	동부 원점	258686.773	119849.905	5.610	하이면 덕호리 782-3	2020. 6. 2.	철재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250	공통점 (도근점)	330542	세계	34° 55' 10.9989"	128° 07' 23.6549"	동부 원점	258539.754	119882.776	16.744	하이면 덕호리 산66-21	2020. 6. 2.	맨홀식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251	공통점 (도근점)	330571	세계	34° 59' 11.3685"	128° 08' 29.6360"	동부 원점	265932.897	121621.200	137.005	하이면 봉원리 141-2	2020. 6. 25.	맨홀식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252	공통점 (도근점)	330572	세계	34° 59' 18.9562"	128° 08' 33.9087"	동부 원점	266165.803	121731.576	134.843	하이면 봉원리 529-1	2020. 6. 25.	철재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253	공통점 (도근점)	330573	세계	34° 59' 22.1440"	128° 08' 36.8160"	동부 원점	266263.413	121806.153	133.942	하이면 봉원리 산49-3	2020. 6. 25.	철재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254	공통점 (도근점)	330574	세계	34° 59' 24.3293"	128° 08' 40.870"	동부 원점	266329.879	121909.548	134.120	하이면 봉원리 131-2	2020. 6. 25.	맨홀식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255	공통점 (도근점)	330575	세계	34° 59' 27.0744"	128° 08' 46.6285"	동부 원점	266413.226	122056.318	139.770	하이면 봉원리 529-1	2020. 6. 25.	맨홀식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256	공통점 (도근점)	330576	세계	34° 59' 28.8893"	128° 08' 54.5203"	동부 원점	266467.450	122256.944	141.524	하이면 봉원리 529-1	2020. 6. 25.	철재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257	공통점 (도근점)	330578	세계	34° 59' 27.3384"	128° 09' 08.9915"	동부 원점	266416.535	122623.547	145.951	하이면 봉원리 산36-2	2020. 6. 25.	맨홀식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258	공통점 (도근점)	330580	세계	34° 59' 24.5724"	128° 09' 19.2377"	동부 원점	266329.090	122882.687	152.152	하이면 봉원리 518	2020. 6. 25.	맨홀식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259	공통점 (도근점)	330581	세계	34° 59' 22.4264"	128° 09' 23.4038"	동부 원점	266262.062	122987.789	155.515	하이면 봉원리 518	2020. 6. 25.	철재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260	공통점 (도근점)	330582	세계	34° 59' 19.3409"	128° 09' 25.6826"	동부 원점	266166.486	123044.781	159.380	하이면 봉원리 82-2	2020. 6. 25.	맨홀식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261	공통점 (도근점)	330590	세계	34° 58' 40.2978"	128° 08' 59.4188"	동부 원점	264968.904	122368.434	166.563	하이면 봉원리 261	2020. 6. 25.	기타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262	공통점 (도근점)	330598	세계	34° 58' 35.9342"	128° 08' 58.8566"	동부 원점	264834.548	122353.030	175.930	하이면 봉원리 산78	2020. 6. 25.	기타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263	공통점 (도근점)	330610	세계	34° 59' 03.6130"	128° 08' 35.0810"	동부 원점	265692.703	121757.253	152.286	하이면 봉원리 산63-4	2020. 6. 25.	철재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264	공통점 (도근점)	330611	세계	34° 59' 04.6126"	128° 08' 31.3036"	동부 원점	265724.331	121661.707	147.107	하이면 봉원리 539	2020. 6. 25.	기타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265	공통점 (도근점)	330612	세계	34° 59' 04.0865"	128° 08' 29.5322"	동부 원점	265708.503	121616.640	148.761	하이면 봉원리 산64	2020. 6. 25.	철재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순번	기준점		좌표계	경위도 좌표		원점명	평면좌표 (m)		표고 (m)	소재지	설치일	표지 재질	측량성과 보관장소
	명칭	번호		위도	경도		X (m)	Y (m)					
266	공통점 (도근점)	330613	세계	34° 59' 00.8088"	128° 08' 25.5399"	동부 원점	265608.362	121514.513	155.031	하이면 봉원리 489-8	2020. 6. 25.	철재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267	공통점 (도근점)	330614	세계	34° 59' 02.6935"	128° 08' 22.9286"	동부 원점	265667.012	121448.781	145.295	하이면 봉원리 496-4	2020. 6. 25.	철재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268	공통점 (도근점)	330615	세계	34° 56' 52.8873"	128° 09' 40.7678"	동부 원점	261649.889	123389.509	103.295	하이면 와룡리 583	2020. 6. 25.	기타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269	공통점 (도근점)	330616	세계	34° 56' 55.3317"	128° 09' 44.5647"	동부 원점	261724.411	123486.486	110.380	하이면 와룡리 583	2020. 6. 25.	기타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270	공통점 (도근점)	330617	세계	34° 56' 55.9850"	128° 09' 46.3041"	동부 원점	261744.175	123530.791	112.905	하이면 와룡리 583	2020. 6. 25.	기타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271	공통점 (도근점)	340384	세계	34° 59' 30.4463"	128° 11' 02.9470"	동부 원점	266488.253	125514.416	89.945	상리면 척번정리 270	2020. 6. 25.	철재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272	공통점 (도근점)	340385	세계	34° 59' 26.5582"	128° 11' 01.2476"	동부 원점	266368.784	125470.339	93.408	상리면 척번정리 270	2020. 6. 25.	철재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273	공통점 (도근점)	340526	세계	34° 59' 44.7665"	128° 11' 15.3221"	동부 원점	266927.013	125831.855	83.701	상리면 척번정리 96-2	2020. 6. 25.	철재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274	공통점 (도근점)	340530	세계	34° 59' 52.3086"	128° 11' 16.2855"	동부 원점	267159.249	125858.176	79.614	상리면 척번정리 852	2020. 6. 25.	철재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275	공통점 (도근점)	340531	세계	34° 59' 50.9152"	128° 11' 16.0871"	동부 원점	267116.347	125852.794	79.929	상리면 척번정리 852	2020. 6. 25.	맨홀식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276	공통점 (도근점)	340532	세계	34° 59' 49.7661"	128° 11' 16.0250"	동부 원점	267080.947	125850.931	80.784	상리면 척번정리 852	2020. 6. 25.	철재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277	공통점 (도근점)	340533	세계	34° 59' 51.0565"	128° 11' 18.9964"	동부 원점	267120.101	125926.610	79.685	상리면 척번정리 852	2020. 6. 25.	맨홀식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278	공통점 (도근점)	340539	세계	34° 59' 49.7058"	128° 11' 20.7152"	동부 원점	267078.124	125969.858	80.077	상리면 척번정리 852	2020. 6. 25.	철재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279	공통점 (도근점)	340543	세계	34° 59' 50.9086"	128° 11' 19.6495"	동부 원점	267115.408	125943.135	79.760	상리면 척번정리 852	2020. 6. 25.	철재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280	공통점 (도근점)	340544	세계	34° 59' 48.1843"	128° 11' 17.0129"	동부 원점	267031.997	125875.588	81.686	상리면 척번정리 852	2020. 6. 25.	철재	경상남도고성군청 민원봉사과

고성군 고시 제 2020-199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 8. 27.

고 성 군 수

- 아 래 -

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내용

지구명	위 치	지정 내용			지정사유	비 고
		유형	등급	면적(㎡)		
제전지구	경상남도 고성군 하이면 덕명리 23-15 일원	해일 위험 지구	가	100,884	해일위험지구 지정 관리 및 정비를 통한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신규

2. 지정기간: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정비사업 완료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될 때 까지

붙 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형도면 1부(따로붙임)

제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현황

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현황

□ 대상지구 개요

○ 대상지구명: 제전지구

○ 위 치: 경상남도 고성군 하이면 덕명리 23-15번지 일원

○ 위험지구 지정개요

- 유형 및 등급 : 해일위험지구, 등급 : 가
- 지정면적 : 100,884 m^2(육역+수역)

□ 위험요인 및 피해주기

○위험요인

- 제전지구는 태풍 내습 시 상습적으로 해일과 월파에 의한 인근 주택 및 어선의 침수가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재발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임

○피해주기 : 10년(일우량 351 mm)

Ⅱ. 과거 피해현황

□과거피해현황

발생일자	피 해 개 요		조치사항
	원인	내용	
'03.09.12	• 태풍"메미" 일최대강우 351mm기록 • 해일고 165.6cm기록 • 해일 및 월파로 인근 주택 및 어선 침수	• 제전마을 인근 주거지 및 어선 침수	마을주민 대피조치
'12.09.17	• 태풍"산바" 일최대강우 161mm기록 • 해일고 89.9cm기록 • 해일 및 월파로 인근 방파제 및 호안 붕괴	• 제전항 방파제 (L=15m, B=6m) 및 호안(L=30m) 유실	원상복구 실시

□피해사진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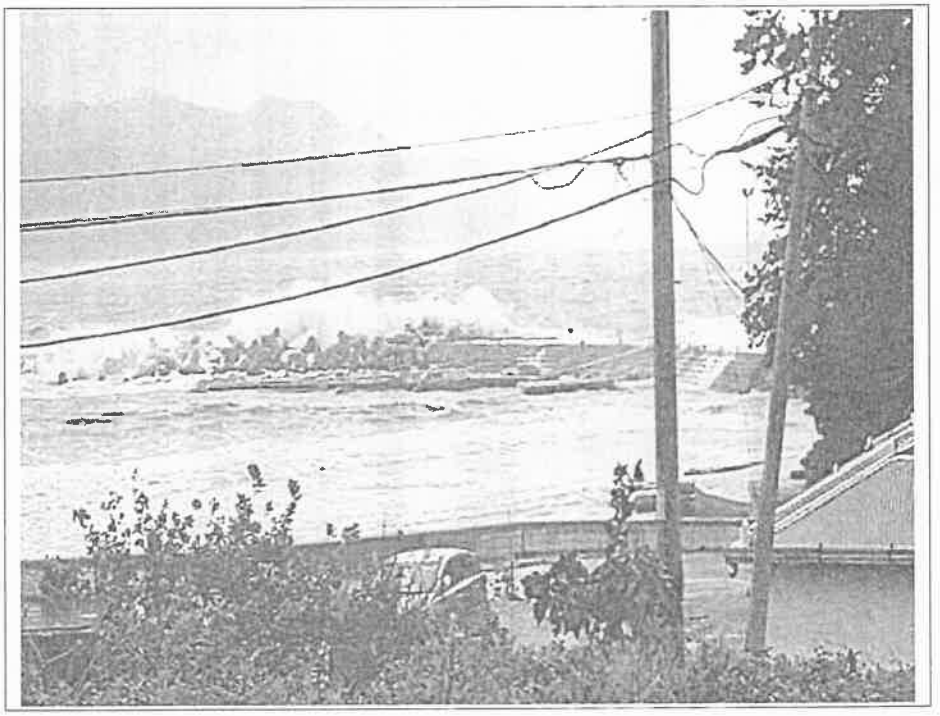

□피해사진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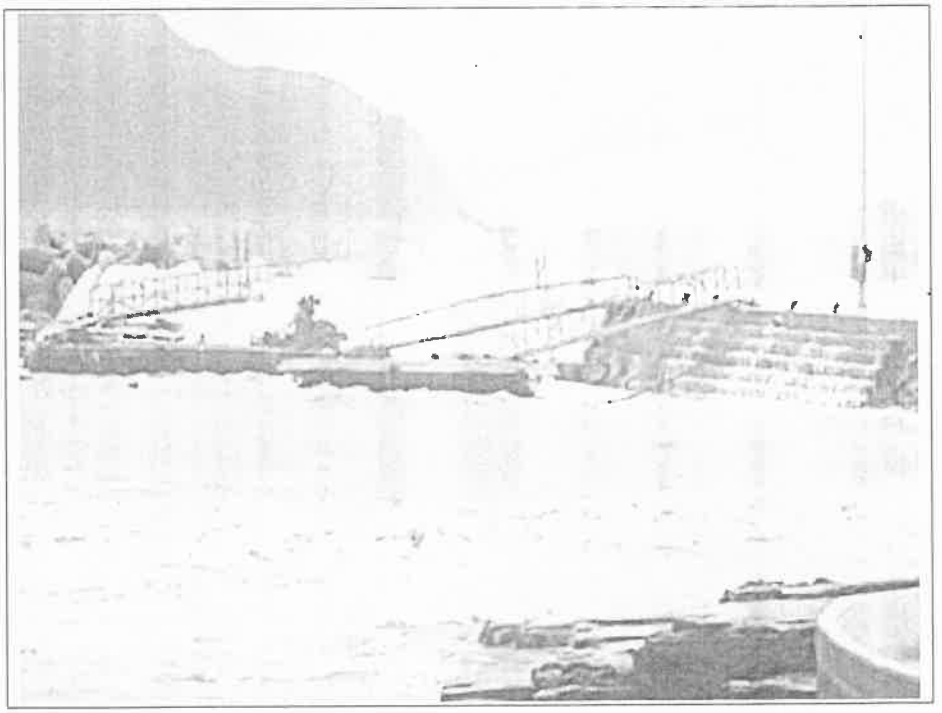

□피해사진3

□피해사진4

Ⅲ. 현황

□지구지정(지형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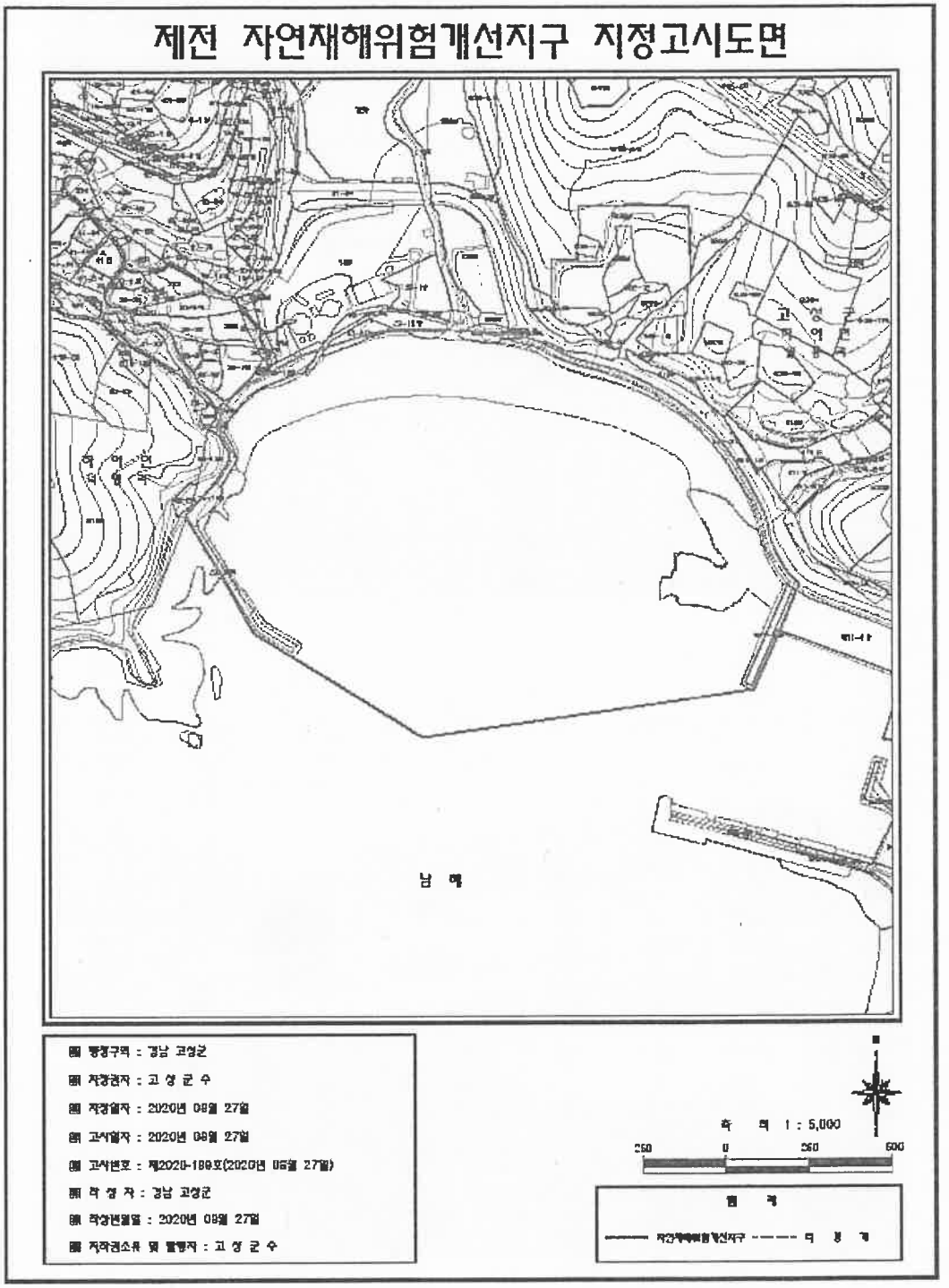

□위치도 및 현황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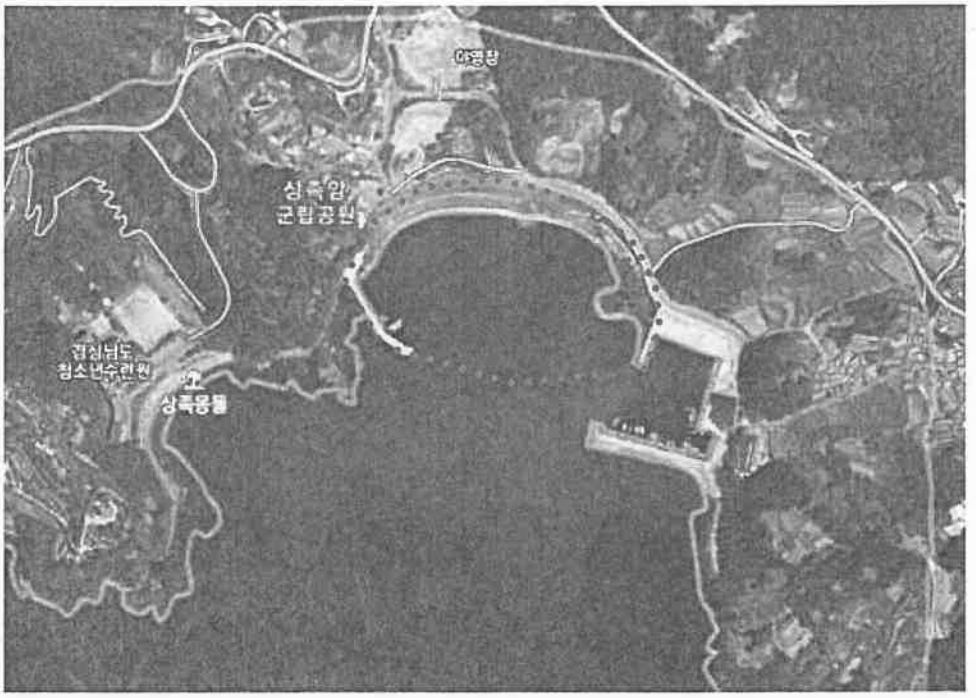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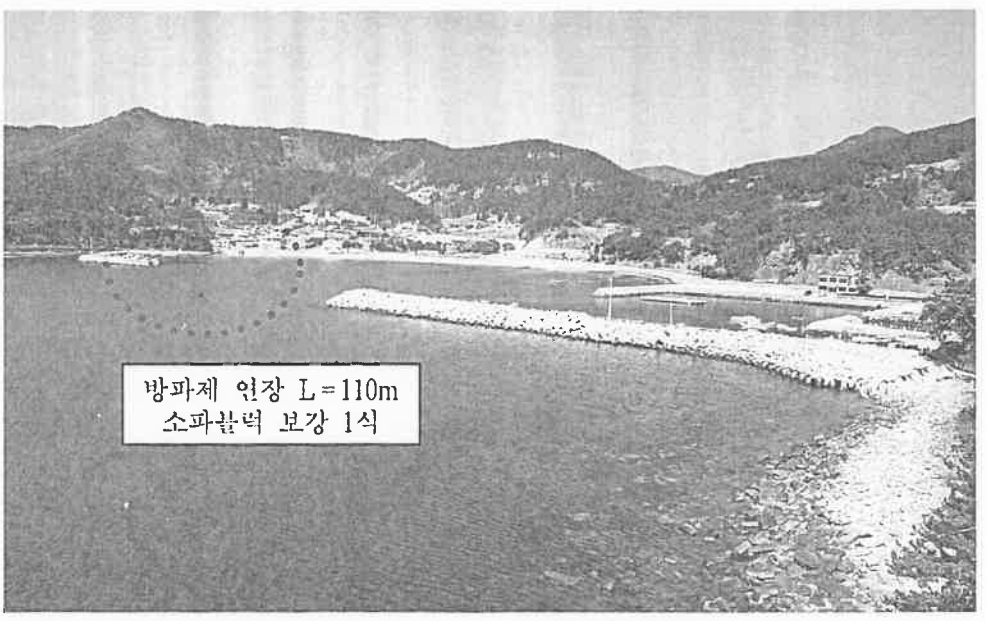

Ⅳ.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

□정비사업 추진계획

○사업량: 방파제 증설 L=110 m, 소파블럭 보강 1식

○사업비: 8,000백만원(공사비 6,912, 모니터링비 361, 실시설계비 727)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총 사업비	2020까지	연차별 투자계획	
			2021년	2022년
사업내용	- 실시설계 - 방파제 증설 - 소파블럭 1식	-	- 실시설계	- 방파제 증설 - 소파블럭 1식
사업비	8,000	-	777	7,273
국 비(50%)	4,000	-	363	3,637
지방비(50%)	4,000	-	364	3,636

〈〈 사업계획 상세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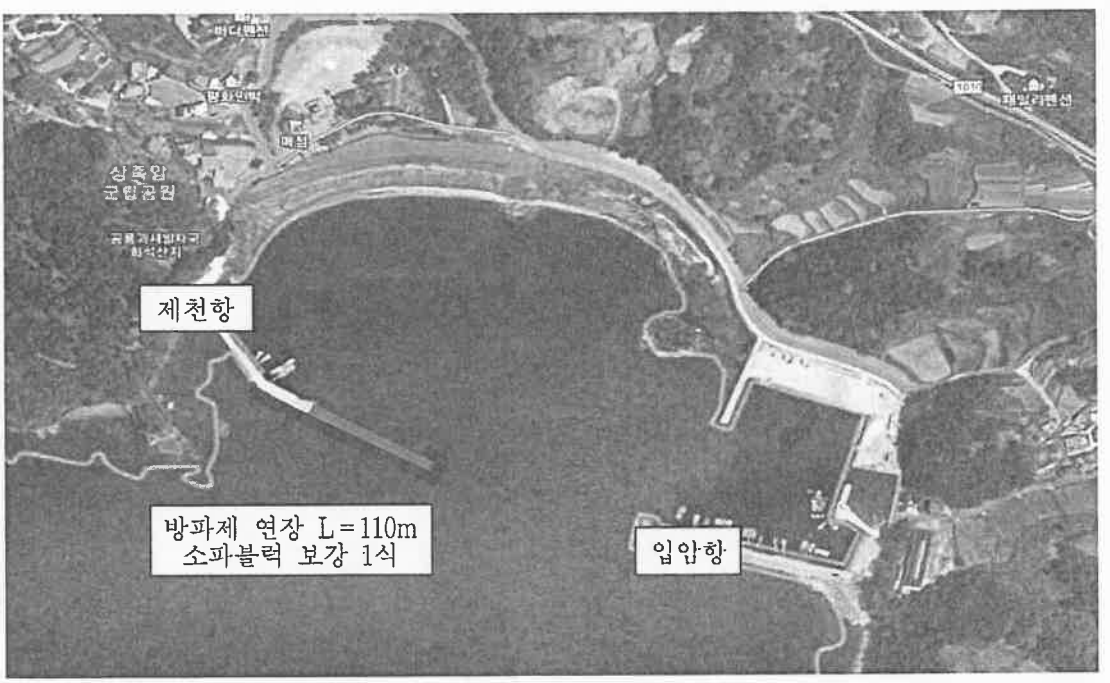

□정비효과

○정비효과

- 인명보호 : 5가구 10명
- 건물보호 : 7동(가옥 5동, 관광지 2동)
- 주거지 및 관광지보호 : 1.00 ha
  - ·주거지 0.23 ha
  - ·관광지 0.77 ha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편입 대상지

연번	토지소재지		지목	면적(㎡)		관리자		비고
	주소	번지		총	편입	주소	성명	
헤일위험지역(제전지구)				101,371	100,884			수역 편입면적 포함
				4,298	3,811			수역 면적 미포함
1	고성군 하일면 덕명리	23-8	구거	347	67		국(건설교통부)	
2	고성군 하일면 덕명리	23-9	잡종지	506	166		국(재정경제부)	
3	고성군 하일면 덕명리	23-10	잡종지	940	664		국(재정경제부)	
4	고성군 하일면 덕명리	23-11	구거	24	14		국(건설교통부)	
5	고성군 하일면 덕명리	23-14	도로	686	610		국(해양수산부)	
6	고성군 하일면 덕명리	23-15	제방	314	313		국(해양수산부)	
7	고성군 하일면 덕명리	23-16	잡종지	621	140		고성군(경상남도)	
8	고성군 하일면 덕명리	산19	임야	15,511	3		고성군	
9	고성군 하일면 월흥리	911-3	도로	7,759	67		국(건설교통부)	
10	고성군 하일면 월흥리	911-4	잡종지	4,985	166		국(해양수산부)	
11	고성군 하일면 월흥리	911-5	제방	406	664		국(해양수산부)	
12	고성군 하일면 월흥리	925	도로	3,041	14		고성군	
13	고성군 하일면 월흥리	926-1	전	379	610		고성군(경상남도)	
14	고성군 하일면 월흥리	926-5	전	75	313		고성군(경상남도)	
15	-	-	-	97,073	97,073		-	수역

고성군 공고 제2020-1305호

전자공인 등록 공고

「고성군 공인조례」 제6조의2(전자공인의 등록 및 관리)에 따라 전자공인 등록을 같은 조례 제9조(공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8. 18.

고 성 군 수

1. 전자공인 등록 사유 : 대형폐기물 온라인 신고필증 발행
(대형폐기물 온라인 시스템구축)
2. 전자공인 등록·개시일 : 2020. 8. 18.
3. 전자공인명 및 인영

구 분	공 인 명	인 영	서체 및 규격	관리부서
등록공인	고성읍장인		한글전서체 2.1cm×2.1cm	환경과 (환경미화담당)
등록공인	삼산면장인		한글전서체 2.1cm×2.1cm	〃
등록공인	하일면장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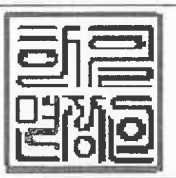	한글전서체 2.1cm×2.1cm	〃
등록공인	하이면장인		한글전서체 2.1cm×2.1cm	〃

구 분	공 인 명	인 영	서체 및 규격	관리부서
등록공인	상리면장인		한글전서체 2.1cm×2.1cm	환경과 (환경미화담당)
등록공인	대가면장인		한글전서체 2.1cm×2.1cm	〃
등록공인	영현면장인		한글전서체 2.1cm×2.1cm	〃
등록공인	영오면장인		한글전서체 2.1cm×2.1cm	〃
등록공인	개천면장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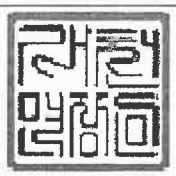	한글전서체 2.1cm×2.1cm	〃
등록공인	구만면장인		한글전서체 2.1cm×2.1cm	〃
등록공인	회화면장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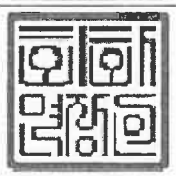	한글전서체 2.1cm×2.1cm	〃
등록공인	마암면장인		한글전서체 2.1cm×2.1cm	〃
등록공인	동해면장인		한글전서체 2.1cm×2.1cm	〃

구 분	공 인 명	인 영	서체 및 규격	관리부서
등록공인	거류면장인		한글전서체 2.1cm×2.1cm	환경과 (환경미화담당)